

종합감사

감 사 보 고 서

－ 함평군 정기종합감사 －

2021. 7.



전라남도

JeollaNamdo

[감 사 관 실]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함평군의 조직·인사 운영, 주요재정사업 추진, 예산편성과 집행, 인·허가 처리실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
- 행정사무의 적법성·타당성, 재정집행의 건전성·투명성 확보

2. 감사대상 및 범위

- 함평군 본청,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17년 2월부터 '21년 2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중점

- 국·도정 등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 인사관리·조직운영, 인·허가 및 민원처리의 적정성
- 주요재정사업 추진실태와 예산낭비 사례, 소극행정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 관련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4. 감사기간 및 인원

- '21. 2. 22.부터 3. 3.까지 7일간 감사인력 16명을 투입하여 감사 실시

II. 감사결과

1. 처분요구사항 총괄

(단위 : 건/ 백만원)

총계 (가+나+다+라)	신분상 처분			행정상 처분(건)												모범 사례 (다)	사전 컨설팅 (라)
	합계 (가)	징계	훈계	합계 (나=A+B+C+D:E)	시 정							주의 (B)	개선 (C)	통보 (D)	기관 경고 (E)		
					계 (A=a+b)	재정상 처분(건/백만원)					재정상 처분외 시정 (b)						
						소계 (a)	회수	추징	감액	기타							
60	26 (49명)	1 (1명)	25 (48명)	30	19 (901)	11 (901)	3 (60)	3 (52)	2 (285)	3 (504)	8	3	2	5	1	2	2

2. 주요 지적사항

① 인사규칙 개정절차 미이행 등 인사운영 부적정

1. 함평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절차 미이행

- 위 군(총무과)은 '19. 11월에 「함평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하면서 승진후보자 명부와 관련한 자격증 가산점 조항을 폐지
- 「지방공무원법」 제8조 등에 인사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고, 가산점을 폐지할 경우는 사전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총무과)은 '19. 11월에 가산점 조항을 삭제하는 「함평군 인사규칙」을 개정하며 인사위원회 사전심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미이행
 - 그로 인하여 직원들의 자격증 가산점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 초래

2. 자격증 가산점 평정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총무과)은 '17. 7월부터 '21. 2월까지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6개월 단위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면서 자격증 가산점 평정을 추진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에 가산점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규칙으로 정하고,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에 응시하여 임용된 자의 해당 자격증은 자격증 가산점 부여를 불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총무과)은 '17. 7월부터 '19. 7월까지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을 의무화하는 특수직급 등에 임용된 81명에게 자격증 가산점을 부당 부여
- 또한, 특수직급 이외 일반직급에 대해서는 자격증 가산점을 폐지한 「함평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19. 11월)으로 '19. 12월부터는 자격증 가산점 부여가 불가능한데도 66명에게 계속해서 부당 부여
- 그로 인하여 부적정하게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다른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 초래

☞ 인사규칙 개정절차 등을 미이행한 당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자격증 가산점을 소속 직원들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② 녹색쌈지숲 등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위 군(산림공원과)은 '19년부터 '21년까지 녹색쌈지숲 조성 등 산림휴양 녹색공간조성을 목적으로 3개 사업을 보조금(810백만원)을 교부받아 추진
- 「산림자원법」 제2조에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을 할 경우 면 지역은 제외하도록 규정(읍·동 지역만 가능)
 - 그런데 위 군(산림공원과)은 '19년에 동 사업을 1건(20백만원)만 읍지역에 추진하고, 나머지 3건(230백만원)을 면 지역(○○면, ○○면)에 부당 추진
 - 그로 인하여 도심 생활권 녹색공간 확대라는 당초 사업목적은 저해하는 결과 초래
- 「2019년 산림사업 시행지침」에 나무은행 사업비로는 조경용 수목을 구입 불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산림공원과)은 '19년에 나무은행 보조금에서 ‘경로당 주변 경관 조성용 수목 구입비’ 등으로 2건(2,540천원)을 부당 집행
-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에 ‘숲길조성사업’은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후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산림공원과)은 ‘수산봉 숲길정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하면서 전문기관에 타당성 평가 의뢰를 미이행하는 등 업무 소홀

- 그 결과 전문기관을 통해 숲길노선 선정 등 사업완성도를 높일 기회 상실

☞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고 사업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의 성과 달성을 저해한 관련자 2명에게 “훈계요구”

③ 사방사업 등 산림토목사업 추진 부적정

- 위 군(산림공원과)은 '17년부터 '20년까지 '2018년 ○○ ○○지구 계류 보전사업' 등 산림토목사업(사방·임도)을 보조금(2,476백만원)으로 추진
 - 「사방사업법」 제2조 제4호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사방사업 대상지는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산림공원과)은 14필지(3,201㎡)에 대해 적게는 10개월 많게는 2년 7개월 동안 사방지로 미지정·고시 및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미등재
 - 그 결과 사방시설 훼손 및 편입토지에 대한 분쟁 발생 등 유지관리 지장 초래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등에 임도는 5년 단위로 수립된 계획에 의해 설치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산림공원과)은 '제4차('16~'20) 임도시설 설치계획'에 미포함된 2건에 대해 '19년에 임도사업을 추진하였고, '17년부터 '20. 12월까지 14건의 임도사업을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미이행하는 등 업무 소홀
 - 그 결과 '19년에 돈사 소음피해로 공사중지 민원(1건) 및 토지사용 승락 지연(2건) 발생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등에 지자채장은 하자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에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산림공원과)은 '18년부터 '20년까지 '2018년 ○○ ○○지구 계류 보전사업' 등 15건의 사업에 대하여 정기 하자검사 미실시
 - 그 결과 하자담보 존속기간 내 시설물 파손 등에 따른 무상 보수 기회 상실

☞ 사방지 지정·고시, 주민설명회 등 사전 절차를 미이행하고 정기 하자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관계자 2명에게 “훈계요구”

④ 물품 및 관급자재 등 구매계약 부적정

- 위 군(재무과)은 '17. 9월부터 '20. 6월까지 내충격수도관 등 3종을 구매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3조에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물품구매 시 납품금액을 1억원 미만으로 분할 구매는 불가하다고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17. 9월부터 '20. 6월까지 내충격수도관 등 3종(1,224백만원)을 1억원 미만으로 분할(63회) 구매요청하고, 재무과는 적정성 검토없이 분할 계약
 - 그로 인하여 2단계 경쟁입찰시와 대비하여 최대 122,412천 원의 예산낭비 초래

👁 분할계약 의뢰한 안전건설과 3명 및 계약 의뢰건을 검토없이 분할계약한 재무과 2명 등 5명에게 “훈계요구”

⑤ 여객자동차 종사자 관리 업무 부당 처리

- 위 군(일자리경제과)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 및 유가 보조금 지급 등 관련 업무를 추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등에 여객자동차 종사자가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운전적성 정밀검사 미수검 시, 자격취소·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일자리경제과)은 전남도로부터 '17. 4. 4. 통보된 종사자격 미달대상자 28명 중 12명*에 대해서 '21. 3. 3. 감사일 현재까지도 행정처분 미이행

* 버스 종사자 12명(음주운전 2, 면허정지 7, 운전정밀검사 3)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23조에 여객운송종사자가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으면 유가보조금을 환수, 지급 정지(1차 위반 6개월, 2차 위반 1년) 및 형사고발 등을 취하도록 규정

** ①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린 경우 ②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을 부풀린 경우 등

- 그런데 위 군(일자리경제과)은 '17년부터 '20년까지 유가보조금관리 시스템에서 **124건(14백만원)의 부정 수급 의심 거래** 내역이 있는데도 **사실관계 확인 및 행정처분(형사고발) 미조치**
- 그로 인하여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가능하도록 방조하여 **보조금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유가보조금 제도의 효율성과 투명성 실추**

- ☞ 유가보조금 업무를 태만(76건 미처리)한 담당자에게 **"경징계요구"**, 여객자동차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유가보조금 업무와 여객자동차 업무를 총괄한 팀장에게 **"훈계요구"**
- ☞ 운송자격 미달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유가보조금 의심수급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환수하도록 **"시정요구"**

⑥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재무과)은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세 부과·징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과 제2항에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 하기 위하여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면제(100분의 100)**하고,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재무과)은 '18. 11월 경 천금농산 유통영농 조합법인이 당초 감면사유인 영농을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유통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감면세액 중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취득세 22백만원을 추징하지 않는 등 **취득세 총 38백만원을 부과·누락**

- ☞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아 부과누락 되거나 감면요건을 위반하여 추징대상이 된 취득세 38백만원을 부과(추징)토록 **"시정요구"**

7 수익용 건축물 신축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미청구

- 위 군(농업기술센터 외 2)은 최근 5년 내 3개 사업*과 관련한 건축물을 신축한 후 사업자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을 세입처리
 - * 농산물 ○○○○ 지원센터 건립, ○○○생태공원 아영장 조성, 함평 ○○○○ 현대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지자체장은 임대업 등 수익사업용 부동산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임대물건 신축 시 납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및 환급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농업기술센터 외 2)은 임대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았고, 임대건축물의 건축비 매입세액 490백만원을 공제 및 환급을 미신청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

☞ 재무과(세입총괄부서)와 협의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 490백만원 공제 및 환급 신청하도록 “시정요구”

8 함평 ○○○ 전광판 구입·설치 부적정

- 위 군(재무과)은 '19. 12월에 함평 ○○○ 전광판 구입 및 설치를 위해 수의계약으로 물품 계약(248백만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공사와 물품이 혼재된 경우 분할발주 여부와 계약목적물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재무과)은 '○○○전광판 설치를 위한 기초 지지대 설치'는 공사에 해당되므로 과업수행이 가능한 자격(철강구조물공사)을 갖춘 업체가 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자격이 없는 ○○○전광판 판매업체(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가 지지대 기초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등 계약업무 소홀
- 위 군(민원봉사실)은 관련부서(친환경농산과)의 ○○○ 전광판 옥외광고물 허가신청('20. 1. 29.)에 따라 허가 처리('20. 2. 13.)

- 「옥외광고물법」 제4조 등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외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 지역에는 광고물 표시·설치를 금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실)은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 접수 당시 해당 ○ ○ ○ 전광판의 국도 등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 설치 가능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가 처리('20. 2. 13.)
- 그로 인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관련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시키는 결과 초래

☞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 및 옥외광고물을 설치 금지 지역에 허가한 담당자 2명에게 “훈계요구”

☞ 관련부서에 허가신청 한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시정요구”

9 2020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 위 군(친환경농산과)은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 경영을 하는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지원
 -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은 쌀소득보전직불금(논)+밭농업직불제(밭)+조건불리지역직불제(영농여건불리지역)로 나누어 지원되던 사업을 '20년부터 통합하여 지원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에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는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외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친환경농산과)은 농지전용 또는 일시사용허가 농지로 직접 지불금 대상이 아닌 69필지(172,585㎡, 57명)에 대해 39백만원을 부당지급

☞ 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닌 농지에 지급한 39백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10 노인복지시설 행정처분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가족행복과)은 '17년부터 '20년까지 16개소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사항 점검 및 조사 검사를 하면서 위반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업무 수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에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 할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같은한 과징금 적용기준(고시)」을 따르도록 규정
 - 그런데, 함평군(가족행복과)는 함평○○요양원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 처분('19. 9. 26.)에 대해 과징금으로 변경('19. 10. 28.)을 요청하자 과징금 부과대상 여부 검토없이 행정처분을 과징금(42백만원)으로 임의 변경하여 그 결과 위법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처분 기회 상실 및 행정의 신뢰도 하락

☞ 법령 검토없이 행정처분을 임의변경한 2명에게 “훈계요구”

11 ○○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추진 부적정

- 위 군(가족행복과)은 '18년부터 '19년까지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당 공기청정기 보급'을 국도비 보조사업(844백만원)으로 추진
- 「보조금관리법」 제22조 등에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 장(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또한 보건복지부 「공기청정기 보급계획」에 공기청정기는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여 시·군에서 직접 구입·설치하고, 유지관리비는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가족행복과)은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사업을 직접 추진 하지 않고 임의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여 (사)대한○○회 ○○○지부에서 추진하도록 했으며
 - 유지관리비도 군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민간자본사업 보조비 에서 유지관리비(5년분 488백만원)를 집행하도록 함
- 「지방계약법」 제8조에 지자체장은 그 지역 주민들의 계약대행요구가 있으면 계약업무를 대행할 수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라고 규정

- 그런데 위 군(재무과)은 (사)대한○○회 ○○○지부로부터 계약대행 요청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고문 입찰참가자격의 '자체유지보수 조직 보유'항목을 미충족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통보
- 그 결과 보조금 부당 집행으로 당초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었으며, 계약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행정의 신뢰도 저해

☞ 보조사업의 내용이 변경되는데도 사전승인 없이 처리한 사업부서 2명 및 계약 사무 대행업무를 소홀히 한 계약부서 1명 등 3명에게 “훈계요구”

12 사회보장급여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주민복지과 등 3개 부서)은 관내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지급 및 사후관리 업무추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등에 연 1회 이상 소득·재산을 조사하여 수급자에게 정기 지급되는 수당* 등은 실제소득에 합산하도록 규정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통장 직책수당, 보훈대상자 지자체 추가지원금 등
 - 그런데 위 군(주민복지과)은 정기 지급되는 지원금(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실제소득에 반영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과다 지급(2명, 3,660천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에 복지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주민복지과 등 2개 부서)은 신청한 달을 포함하지 않아 생계급여와 장애인연금을 과소(4명, 1,121천원)지급하고, 사망한 수급자에게 장제급여를 미지급(16명, 12,300천원)
 - 또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등에 수급자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입원 중이면 주거급여는 미지급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실)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4명에게 13개월분을 과다지급(1,161천원)하고, 1명에게는 4개월분 주거급여를 미지급(336천원)

☞ 장제급여비 등 미지급분(21명)에 대해 13,757천원 추가지급하고 주거급여 등 과다지급분(6명) 4,821천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13 함평○○○○ 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 위 군(친환경농산과)은 '17년부터 '20년까지 버섯 품목을 지역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함평○○○○ 영농조합법인에 3,862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보조사업자는 2억원 초과공사는 위탁계약(지자체)하거나 나라장터를 이용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친환경농산과)은 함평○○○○ 영농조합법인이 나라장터가 아닌 군 홈페이지 공고 후 계약(17년 3,000백만원, 1건)하고, 직접 수의계약(19년 292백만원, 1건)을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 관리 소홀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조사업자가 계약상대자 선정 시 다른 법령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법」을 준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친환경농산과)은 보조사업자가 나라장터를 이용하였으나 과도한 제한* 공고로 유찰 후 수의계약(20년 570백만원, 2건) 체결하는 등 「지방계약법」을 미준수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 * (지방계약법 제한입찰)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30억원이상 종합공사의 경우 규모·양의 1/3 이내 제한 (공고문 제한입찰) 특용작물 생산시설(270백만원/5년간 30억원), 원예생산기반(336백만원/5년간 20억)
- 그 결과 동종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잃게 하는 등 특정업체에 특혜 제공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보조사업자의 보조비율 만큼 보조사업비를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친환경농산과)은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10,485천원)을 받았는데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여 예산 낭비(5,794천원) 초래

☞ 4개 사업 중 3개 보조사업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부가가치세 환급금(5,794천원)에 대해서 환수하도록 “시정요구”

14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민원봉사실)은 2003. 1월부터 개발행위 허가업무를 추진
- 「국토계획법」 제133조 등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미완료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실)은 '17. 2월부터 '21. 2월까지 개발행위 허가기간이 경과된 70건에 대하여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 미 실시
 - 그 결과 국토 이용 체계를 일원화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 훼손

☞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미이행한 담당자 2명에게 “훈계요구”

☞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경과된 70건에 대해 행정조치 하도록 “시정요구”

1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관리 부적정

- 위 군(안전건설과)은 관내 87개 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추진
- 「시설물안전법」 제6조 등에 시설물 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정기·정밀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17. 2월부터 '21년 2월까지 유지관리대상 공공시설물(87개소)에 대한 유지관리계획(미수립 13건) 및 정기점검(미 실시 25건)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 민간시설물(공동주택 총 8건 중 5건)은 3종 시설물로서 지자체장이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점검하여야 하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지 않음
 - 그 결과 노후된 공동주택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안전사고 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 초래

☞ 시설물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 2명에게 “훈계요구”

☞ 관련부서는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점검을 실시 및 미등록 민간시설물(공동주택)을 등록·관리하도록 “시정요구”

16 ○○ ○○○○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 위 군(미래전략실)은 '18년부터 '20년까지 “○○ ○○○ 농공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4,447백만원)”을 시행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미래전략실)은 “○○ ○○○○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의 불필요한 천장면(614㎡) 방수로 39백만원의 예산 낭비 초래

☞ 불필요한 천장면 방수로 예산을 낭비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17 소하천 정비사업 행정절차 미이행 및 공사추진 부적정

- 위 군(안전건설과)은 '03년부터 “소하천 종합계획”을 수립·승인받아 재해에 취약한 소하천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시행·관리 추진
- 「소하천 정비법」 제6조에 관리청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고, 변경 필요성이 있을 경우 5년마다 종합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군은 '17년 수정계획을 마련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17년부터 '18년까지의 소하천정비사업 7건에 대하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승인 없이 우선순위를 변경 시행
- 또한 「소하천정비사업 시행지침」에 승인기관의 사전협의, 시행계획승인, 계약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소하천 기능과 직접관련이 없는 콘크리트포장 등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소하천 공사 6건에 대하여 사전설계검토, 시행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미이행하며 사업을 추진하였고,
 - 소하천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급수관 설치, 주택 진입로포장, 도로 확장 등을 시공하여 174,812천 원(제경비 포함)의 예산을 부당집행

☞ 관련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관련자 3명에게 “훈계요구”

18 건축물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 허가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민원봉사실)은 건축허가·사용승인·용도변경 허가 등의 업무를 추진
 - 「건축법」 제52조의4에 공장과 창고 등의 마감재료 중 복합자재를 사용한 경우에 공사감리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실)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시 복합자재품질관리서가 미제출(공장 3건) 되었는데도 검토 및 확인없이 사용승인 처리
 - 또한 「건축법」 제52조에 노유자시설 건축물의 거실 벽 등 실내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없도록 불연, 준불연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실)은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 허가(2건)를 하면서 실내재료 마감표가 미제출 되었는데도 검토 및 확인 없이 용도변경 허가
 - 그로 인하여 화재에 취약한 노인 등을 위한 시설이 화재 예방에 취약하게 되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 발생 우려

☞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설계·감리 건축사에 대해 ○○시 건축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19 함평 ○○○○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부적정

- 위 군(일자리경제과)은 서영종합건설(주)와 '19. 9. 17.부터 '20. 9. 15.까지 “함평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건축공사”(1,809백만원) 추진
 - 위 공사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등의 약정에 천재지변, 중요 관급자재의 공급 지연, 발주기관의 책임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공사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일자리경제과)은 계약상대자의 공사기간 연장을 위한 실정보고서를 공사감리의 검토 및 의견없이(4건 중 2건) 실정보고 내용을 대부분 수용·승인

※ 공사기간 4회 211일 연장 요청 ⇒ 4회 182일 연장 승인

- 또한 「지방계약법」 제22조 규정 등에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재무과)은 1차분 발주부서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 공문을 준공기한 1일이 경과한 '19. 12. 17. 접수 후 별다른 조치없이 준공기한 3일이 경과한 '19. 12. 19. 계약기간 연장 통보를 하는 등 계약업무 소홀
- 그 결과 함평 ○○○○ 시설 현대화사업 공사기간이 장기화 되어 전통시장 입점예정 상인 및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 초래

☞ 「지방계약법」 등의 규정 준수를 소홀히 한 공사 담당자 및 계약 담당자 등 2명에게 “훈계요구”

20 수도법 관련 법적 절차 이행 및 일반수도 사업 추진 부적정

- 위 군(환경상하수도과)은 '17년부터 '20년까지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3건의 일반수도사업을 시행
 - 「수도법」 제7조에 일반수도 사업자는 일반수도 설치(변경)할 때 시·도지사 인가 및 환경부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환경상하수도과)은 일반수도 사업(3건) 추진 시 시·도지사 인가(변경) 및 환경부 협의를 득하지 않고 사업 추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에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추진 시 사전에 심사하여 반영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환경상하수도과)은 현지여건 변경사항*을 재심의하지 않고 최초 심의**시 선정된 업체를 그대로 선정
- * 공사비 변경(648백만원 ⇒ 691백만원(증 43)) ** 최초 공법 심의(서면 / 2019. 8. 2.)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환경상하수도과)은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8,481백만원)’의 수상할증* 과대 반영으로 138,541천원을 감액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 작업장소가 협소하여 작업능률이 현저하게 저하된다고 판단하여 노무비의 25% 할증

- 「폐쇄 상수도관 처리 매뉴얼」에 교체된 노후관로 중 철거가 어려운 기존 노후관은 폐기하거나 충전하도록 규정
- 노후 상수도관로 교체 시 폐기 및 충전 하여야 하나 그대로 폐기(30,169m) 하거나 별도의 몰탈 충전 없이 폐기(1,400m)하여 지하수의 2차 오염 우려

☞ 행정절차 미이행 등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과다 반영된 사업비 139백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21 하수관로 및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 위 군(환경상하수도과)은 감사일(“21. 3. 3.) 현재 “○○ 하수관로 정비사업(3차)” 등 4건의 하수관로 및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행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1.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소홀

- 그런데 위 군(환경상하수도과)은 ‘○○ 하수관로 정비사업(13,018백만원)’ 실시설계 시 우수박스 저축이 예상되어 흙막이를 반영하였으나, 굴착 결과 저축되지 않아 흙막이 설치 공사비 30백만원을 감액해야 하고
- ‘함평 ○○○○처리구역 하수관리 정비사업(21,115백만원)’은 사업 발주 전에 협의 부족으로 사업 중첩구간*이 발생하여 49백만원을 감액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 ○○ 마트 신축공사(상수도 L=160m, 가로등 보호공 7개 중첩)

2.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소홀

- 그런데 위 군(환경상하수도과)은 ‘○○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5,215백만원)’의 지하수위 변동으로 미설시한 물푸기공 및 추진공(27백만원), 중첩 구간*(29백만원) 발생으로 56백만원을 감액해야 하고

* ○○ 하수관로 정비사업(하수도 이토변실, 공기변실 중첩)

- ‘○○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1,745백만원)’과 ‘○○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029백만원)’은 포장 줄눈 과대(1.5m → 3.0m) 반영 (6백만원), 절토고 2.0m 이하 구간 흙막이 불필요(1백만원), 민원 발생으로 EGI웬스 30m 미설치(3백만원) 등 11백만원을 감액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 과다 반영된 146백만원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3. 모범 사례

1 광주도시철도 공사장 폐기 가로수 활용으로 예산절감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철도 공사로 인하여 제거되는 가로수를 함평군으로 기부하도록 요청하여 화양근린공원 등에 활용 예산 절감

□ 추진배경

- 화양근린공원 등 생활권 주변 경관개선 및 그늘 등 쉼터 조성을 위해서는 큰 나무 위주의 식재가 필요하여 장기간 많은 예산 소요로 추진이 어려웠으나
- 광주 도시철도 공사구간 가로수 이식계획을 인지한 후 도시철도건설본부에 함평군으로 이식하여 재활용할 것을 협조요청('20. 4. 승인)
 - 가로수 굴취·운반비(도시철도건설본부), 식재(함평군*나무은행 인력 활용)

□ 추진내용

- 가로수 이식 협조 요청(함평군→도시철도건설본부) : 2020. 4. 10.
- 가로수 이식 가능 통보(도시철도건설본부→함평군) : 2020. 4. 15.
- 화양근린공원 등 3개소 식재 완료 : 2020. 6. ~ 11.

□ 어려움 및 해결노력

- 광주 도시철도 공사가 하절기(7~8월)에 중점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하절기 수목 이식 시 고사위험 및 작업 어려움을 예상되어 수목이식을 10월 이후로 조정 요청하여 수목 활착률 제고

□ 주요성과

- 버려지는 나무를 활용한 공원 등 경관조성으로 6억여원의 예산 절감
 - 팽나무 등 약 12천주(큰 나무 440, 작은 나무 11,012 등)
 - ※ 공사 시 수목대제정비 등 7억원 소요되나 수목이식에 따른 제정비만 투입하여 예산절감
- 공사의 폐기물이 될 나무의 재활용 사례 발굴 및 산림분야 그린 이미지 제고

《참고자료》 폐기 가로수 활용 사진



- 광주도시철도 건설공사장 폐기 예정 가로수 -



- 화양근린공원 등 가로수 이식 대상지 -



- 화양근린공원 등 가로수 이식 작업 사진 -

2 지역문화자원 보존 활용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대상지 내 건축 문화재 자원을 보존·활용한 주차장 조성을 통해 장기적 관점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발전

□ 문제점

- 함평자광원 위치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국비로 용지보상을 완료 하였으나 자광원 건물이 문화재적 가치 있어 보존의 필요성 존재
- 국비사업의 목적을 충족 할 수 있으면서 자광원 건물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1년
- 위 치 :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80-1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주차장 조성 1개소(2,012㎡, 70면)
- 사 업 비 : 4,500백만원(균특 2,450백만원, 군비 2,050백만원)

□ 추진사항

- 사업계획 변경 건의 : 중소벤처기업부
 - 당초 : 건축물 철거 및 주차장 조성(A=2,012㎡, 주차면 70면)
 - 변경 : 건축물 일부 미철거 및 주차장 조성(A=1,386㎡, 주차면 48면)
- 건의내용
 - 기 국비로 취득 한 함평자광원 건물 미 철거시 대체부지 마련 또는 국비를 반납하여야 할 어려운 상황이었음.
 - 역발상으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대로 존치하는 의견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적극적 건의 승인됨
- ☞ 함평자광원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추진(문화관광체육과)
- '21. 1. 7.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함평자광원 보존·활용)
- '21. 1. 19. : 사업계획 변경 승인(토지 및 건물의 국가 지분 등록요)

□ 기대효과

-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함평자광원 건물을 보존하면서 함평전통시장 주차장을 조성하는 성과 목표 달성
- 함평자광원 건물을 문화재로서 보존·활용함으로써 함평천지전통시장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함평자광원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현
장
사
진



4. 처분요구서

목 차

① 환경미화원 징계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개선)	24
② 인사규칙 개정절차 미이행 등 인사운영 부적정(훈계, 통보)	26
③ 녹색쌈지숲 등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사업 추진 부적정(훈계)	29
④ 사방사업 등 산림토목사업 추진 부적정(훈계)	33
⑤ 축산 보조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부적정(주의)	38
⑥ 국민신문고 민원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41
⑦ 물품 및 관급자재 등 구매계약 부적정(훈계)	44
⑧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연장허가 및 사후관리 부적정(훈계)	47
⑨ 여객자동차 종사자 관리 업무 부당 처리(징계, 훈계, 시정)	52
⑩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행정조치 부적정(훈계, 시정)	58
⑪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61
⑫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통보)	68
⑬ 수익용 건축물 신축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미청구(시정)	71
⑭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과징금 부과·징수 부적정(시정)	75
⑮ 환경보전기금 정산업무 태만(훈계, 개선, 통보, 기관경고)	79
⑯ 함평 ○○○ 전광판 구입·설치 부적정(훈계, 시정)	87
⑰ 함평 ○○○극장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훈계)	91
⑱ 준공된 공사에 대한 하자 검사 미실시(주의)	98
⑲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 및 정산검사 부적정(시정)	100
⑳ 2020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시정)	106

㉑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 및 체육회 운영비 정산 부적정(시정, 통보) ···	108
㉒ 노인복지시설 행정처분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	112
㉓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추진 부적정(훈계) ·······	115
㉔ 사회보장급여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	119
㉕ 식품·공중위생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시정) ·········	126
㉖ 수산분야 보조사업 사후관리 부적정(주의) ···········	131
㉗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식품위생감시원 위촉 관리 부적정(시정)	133
㉘ 농업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 및 사후관리 부적정(시정) ·	136
㉙ 함평○○○○ 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훈계, 시정) ····	140
㉚ 농산물 저장유통시설 관련 사업 추진 부적정(훈계) ·······	146
㉛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시정) ·······	151
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관리 부적정(훈계, 시정) ·	153
㉝ ○○ ○○○○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훈계) ···	157
㉞ 소하천 정비사업 행정절차 미이행 및 공사추진 부적정(훈계) ·····	159
㉟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 등록 및 관리 부적정(시정) ·······	164
㊱ 건축물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 허가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통보)	167
㊲ 함평 ○○○○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부적정(훈계) ·········	171
㊳ 수도법 관련 법적 절차 이행 및 일반수도사업 추진 부적정(훈계, 시정) ·	174
㊴ 하수관로 및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	181

전라남도

훈계·개선요구

제 목 환경미화원 징계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함평군(총무과)

훈 계 대 상 자 함평군 ○○과 지방행정○급 ○○○

내 용

1. 업무개요

함평군은 2019. 12. 3. 함평군 환경미화원(무기계약직)인 ‘○○○’을 「함평군 환경미화원 취업 및 복무규정」 제23조 제6호 사유(음주운전 행위)를 들어 견책으로 징계처분 하였다.

지방행정○급 ○○○은 2018. 3. 12.부터 2019. 9. 30.까지 ○○과에서 무기계약직 관리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함평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무기계약 근로자 중 환경미화원은 별도로 정한 복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함평군 환경미화원 취업 및 복무규정¹⁾」 제23조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1회와 2회 시에는 시말서를, 3회 시에는 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함평군 소속 환경미화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야 했다.

1) 2020. 9. 18. 폐지 : 함평군 환경미화원(무기계약근로자)의 취업(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함평군 근로자 취업규정」, 「함평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및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총무과)은 함평경찰서로부터 2018. 4. 11.과 2018. 4. 12.에 환경미화원 ‘○○○’의 2018. 4. 4.의 음주운전과 관련한 수사개시통보와 수사 상황을 통보²⁾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수사결과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함평군(총무과, 前 행정지원과)은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으로부터 2019. 10. 29.에 환경미화원 ‘○○○’의 2019. 8. 27.의 음주운전과 관련한 불구속구공판 처분결과 통보를 받으면서 불구속 구공판 공소사실에 환경미화원 ‘○○○’의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시³⁾되어 있었음에도 과거 2회의 음주운전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적이 없어 징계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2019. 11. 29.에 징계의결을 하면서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사실을 징계 관련 음주운전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2019. 8. 27.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징계사유에 포함하여 견책으로 징계처분하였다.

그로 인하여 음주운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사회적 분위기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함평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함평군수는

- ① 무기계약직 관련 징계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급 ○○○을 훈계하고(**훈계**)
- ② 지방공무원 징계규정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 규정 등을 참고하여 환경미화원 징계사유와 기준을 명확하고 세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행정상 개선요구**)

2) 함평경찰서 KICS생활안전교통과-00000(2018. ○. ○○.), 함평경찰서 KICS생활안전교통과-00000(2018. ○. ○○.)

3) 1회) 2012. ○.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2회) 2018. ○.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전 라 남 도

훈계요구 및 통보

제 목 인사규칙 개정절차 미이행 등 인사운영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함평군(총무과)

훈 계 대 상 자 함평군 ○○○○○사업소 지방행정○급 ○○○

내 용

1. 업무개요

함평군은 2019. 11. 29. 승진후보자 명부와 관련한 자격증 가산점 조항을 폐지하는 「함평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하였고, 2017년 7월부터 2021. 2월까지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6개월 단위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면서 자격증 가산점 평정을 추진하였다.

지방행정○급 ○○○은 2019. 2. 11.부터 2020. 7. 28.까지 ○○과(前 ○○○○과)에서 인사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함평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절차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한 규칙안은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준이나 자격증 등의 종류 등을 신설·변경·폐지하는 규칙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공개하고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자격증 가산점 관련 사항을 변경하는 「함평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고 사전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총무과, 前 행정지원과)은 2019. 11. 29.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함평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절차를 미이행하였고, 소속 직원들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자격증 가산점 조항을 삭제하였다.

그로 인하여 소속 직원들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자격증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자격증 가산점 평정업무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가산점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고,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에 응시하여 임용된 자의 해당 자격증은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에는 「함평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군(총무과, 前 행정지원과)은 2017. 7월부터 2019. 7월까지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을 의무화하는 특수직급 등에 임용된 [별표 1] “2019. 11. 29. 이전 자격증 가산점 부여 부적정 명세”와 같이 81명에게 자격증 가산점을 부당하여 부여하였다.

또한 특수직급 이외 일반직급에 대해서는 자격증 가산점을 폐지한 「함평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2019. 11. 29.)으로 2019. 12월부터는 자격증 가산점을 줄 수 없는데도 [별표 2] “2019. 11. 29. 이후 자격증 가산점 부여 부적

정 명세”와 같이 66명에게 계속해서 자격증 가산점을 부당하게 부여하였다.

그로 인하여 부적정하게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다른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함평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함평군수는

- ① 「함평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등 절차를 미이행하고, 자격증 가산점을 부당하게 부여한 지방행정○급 ○○○을 훈계하고(**훈계**)
- ② 앞으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자격증 가산점을 소속 직원들에게 합리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1] ~ [별표 2] 생 략

전라남도

훈계요구

제 목 녹색쌈지숲 등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함평군(산림공원과)

훈 계 대 상 자 ① 함평군 ○○○○과 지방농업○급 ○○○

② 함평군 ○○○○○과 지방녹지○급 ○○○

내 용

1. 업무개요

함평군은 주민의 정서함양 등을 위하여 건물 사이 자투리땅에 녹색쌈지숲 등 생활권 숲의 질적 향상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을 조성하고, 숲과 숲을 연결하는 숲길 조성·정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농업○급 ○○○은 2019. 2. 11.부터 2020. 10. 31.까지 ○○○○사업소와 ○○○○과에서 도시 숲 및 숲길 조성·정비 담당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지방녹지○급 ○○○은 2018. 8. 13.부터 2021. 3. 3. 감사일 현재까지 ○○○○사업소와 ○○○○과에서 도시 숲 및 숲길 조성·정비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도시림(녹색쌈지숲)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19년 산림사업 시행지침(2019.1.)」에 따르면 녹색쌈지숲 조성사업(116쪽)은 면 지역은 제외하고 동·읍지역 내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숲을 조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2019년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규정에 따르면 면 지역은 사업대상 지역에서 제외하고 추진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산림공원과, 前 산림공원사업소)은 2019년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래 [표 1] “2019년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추진 명세”와 같이 총 4개의 사업 중 읍 지역에는 단 1건(○○읍)의 사업만을 추진하고, 사업대상이 아닌 면 지역에 3건(△△면 2, □□면 1)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2019년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추진 명세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비(백만원)			사업 기간
		계	국비	군비	
계	4개 사업	250	125	125	-
녹색쌈지숲 조성사업(함평◇◇지구)	△△면 ◇◇리	59	29.5	29.5	2019. 4. 1. ~ 5. 23.
녹색쌈지숲 조성사업(함평◇◇지구)	△△면 ◇◇리	84	42	42	2019. 4. 11. ~ 6. 13.
녹색쌈지숲 조성사업(함평◇◇지구)	□□면 ◇◇리	87	43.5	43.5	2019. 4. 11. ~ 6. 9.
녹색쌈지숲 조성사업(함평◇◇지구)	○○읍 ◇◇리	20	10	10	2019. 4. 1. ~ 5. 20.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도심 생활권 내에 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 정주 환경 등을 개선하려는 당초 사업목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나무은행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2019년 산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나무은행 사업으로 도시숲 조성, 가로수 식재 등의 수목 구입비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2019년 나무은행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침에서 규정한 예산사용이 금지된 항목을 사전에 확인하고, 적정한 예산집행인지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산림공원과)은 2019년 3월부터 나무은행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래 [표 2] “2019년 나무은행사업 세부집행 명세”와 같이 ‘○○읍 ○○1리 경로당 주변 경관조성용 수목대’외 1건에 대해 예산사용이 금지된 수목구입비로 2,540천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표 2] 2019년 나무은행사업 세부집행 명세

일 자	집 행 내 역	집행액(천원)	거 래 처
'19. 3. 21.	○○읍 ○○1리 경로당 주변 경관조성용 수목대	1,100	○○농장
'19. 4. 4.	○○○ 문화복지센터 주변 조경수 조성사업 수목대	1,440	○○농장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버려지는 수목의 재활용을 위한 당초 사업목적이 단순 조성사업으로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숲길조성사업 타당성 평가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제3조에 따르면 타당성평가란 숲길조성계획의 노선선정·조성계획의 적절성, 생태계·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숲길 조성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타당성 평가의 시기는 숲길 조성 대상지로 선정한 숲길조성사업의 실시설계 이전에 수탁자가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2021년 수산봉 숲길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숲길 조성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의 실시설계를 추진하기 이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법인 등 전문기관에 타당성 평가를 위탁하여 추진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산림공원과)은 전문기관에 숲길 조성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2021. 2. 9. ‘2021년 ○○봉 숲길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시설물의 적재적소 배치에 따른 사업비 절감과 노선선정, 안전성 등 숲길조성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함평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함평군수는 도시 숲 및 숲길 조성사업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농업○급 ○○○와 지방녹지○급 ○○○를 훈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전라남도

훈계요구

제 목 사방사업 등 산림토목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함평군(산림공원과)

훈 계 대 상 자 ① 함평군 ○○○○과 지방녹지○급 ○○○

② 함평군 ○○○○과 지방녹지○급 ○○○

내 용

1. 업무개요

함평군은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여 국토를 보전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한 산림경영 기반시설과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방사업 및 임도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녹지○급 ○○○은 2020. 7. 27.부터 2021. 3. 3.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사방사업 등 산림토목 담당팀장으로, 지방녹지○급 ○○○은 2017. 10. 18.부터 2021. 3. 3. 감사일 현재까지 ○○○○○사업소와 ○○○○○과에서 사방사업 등 산림토목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사방지 지정·해제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사방사업법」 제2조, 제4조 및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지침」 제2장 2.5.1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사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 실시설계 완료 후 시공계약 이전에 사방지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9조 및 제 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¹⁾을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지구 등의 지정여부 및 행위 제한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사방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행위 제한 내용 등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산림공원과, 前 산림공원사업소)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방댐과 계류보전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사방지 지정·고시를 하면서 아래 [표 1] “2018 ~ 2020 사방지 지정·고시 명세”와 같이 감사일(2021. 2. 16.)까지 사방지를 지정·고시 하지 아니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에도 등재하지 않는 등 사방지 지정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표 1] 2018 ~ 2020 사방지 지정·고시 명세

연도별	사업종	사업지구	사방지 지정현황		
			필지수	지정면적(㎡)	지정일
계		4개 사업	14필지	3,201	-
2018	사방댐	○○면 ○○지구	○○면 ○○리 000	813	2021.2.19.
2019	계류보전	○○면 ○○리	○○면 ○○리 000	926	"
2020	계류보전	○○면 ○○리	○○면 ○○리 000	827	"
2020	사방댐	○○면 ○○리	○○면 ○○리 000	490	"
			○○면 ○○리 000	145	"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사방사업으로 추진한 구조물의 훼손과 편입된 토지사용에 대한 분쟁 발생 등 사방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3. 임도사업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1) 부동산정보시스템(KRAS),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IPS) 등

국유림관리소장은 5년 단위로 연도별 임도설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라 임도는 임도설치계획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임도설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 주민에게 사업개요, 사업방향, 설계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사업의 이해를 돕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5년 단위로 계획된 ‘제4차(2016.~2020.) 임도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에 포함된 대상지에 임도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산림공원과, 前 산림공원사업소)은 2019년 작업임도 신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래 [표 2] “5년 단위 계획 미포함 임도시설사업 명세”와 같이 2개 사업을 5년 단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 5년 단위 계획 미포함 임도시설사업 명세

사 업 명	사업량 (km)	사 업 비(백만원)				사업 기간
		계	국비		군비	
계	0.5	171	119.7	5.13	46.17	
2019 작업임도 신설사업(○○○○지구)	0.4	122	85.4	3.66	32.94	2019.10.17.~12.20
2019 ○○○○지구 작업임도 신설(추가)	0.1	49	34.3	1.47	13.23	2019.11.27.~12.26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임도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래 [표 3] “2017 ~ 2020 임도시설 주민설명회 미개최 명세”와 같이 14개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표 3] 2017 ~ 2020 임도시설 주민설명회 미개최 명세

사 업 명	사업량 (km)	사 업 비(백만원)				사업 기간
		계	국비	도비	군비	
계(14개 사업)	12.27	1,552	1,016.4	101.35	434.25	
2017 ○○○○지구 간선임도개설사업	1.26	176	123.2		52.8	'17.3.29.~'17.8.25.

사 업 명	사업량 (km)	사 업 비(백만원)				사업 기간
		계	국비	도비	군비	
2017 ○○○○지구 작업임도개설사업	1.7	130	91		39	'17.3.31.~'17.8.17.
2018 임도구조개량사업(○○○○지구)	1.26	45	31.5		13.5	'18.4.23.~'18.6.11.
2018 ○○○○지구 간선임도개설사업	1.26	158	110.6		47.4	'18.3.22.~'18.8.18.
2018 ○○○○지구 작업임도개설사업	0.7	98	68.6		29.4	'18.4.30.~'18.8.27.
2018 ○○○○지구 간선임도개설사업	1.04	113	79.1		33.9	'18.8.29.~'18.12.26.
2019 ○○○○지구 간선임도개설사업	0.3	59	41.3	1.77	15.93	'19.5.13.~'19.10.18.
2019 작업임도신설사업(○○○○지구)	0.4	122	85.4	3.66	32.94	'19.10.17.~'19.12.20.
2019 ○○○○지구 작업임도실설사업	0.1	49	34.3	1.47	13.23	'19.11.27.~'19.12.26.
2019 간선임도개설사업(○○○○지구)	0.82	76	53.2	2.28	20.52	'19.12.2.~'20.2.29.
2019 간선임도개설사업(○○○○지구)	0.58	109	76.3	3.27	29.43	'19.12.17.~'20.3.5.
2020 간선임도개설사업(○○○○지구)	0.92	141	98.7	7.1	35.2	'20.6.9.~'20.11.13.
2020 작업임도신설사업(○○○○지구)	0.82	100		73	27	'20.6.29.~'20.11.19.
2020 작업임도신설사업(○○○○지구)	1.11	176	123.2	8.8	44	'20.9.4.~'20.12.28.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사업 추진 중 사업장 주변 돈사 소음 피해 등으로 공사가 중지 (2019. 7. 29.~2019. 9. 25.) 되는 민원(2019년 ○○○○지구 간선임도 개설사업)이 발생하였고, 토지사용 승낙이 지연(2건 / 2019년 ○○○○지구 간선임도 개설사업 등) 되는 등 지역주민과의 마찰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산림토목사업 하자검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사방사업 등 산림토목사업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사방사업 5년, 임도시설 2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산림공원과, 前 산림공원사업소)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사방사업 및 임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래 [표 4] “2018 ~ 2020 산림토목사업 하자검사 실시내역 명세”와 같이 15건의 산림토목사업에 대한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였다.

[표 4] 2018 ~ 2020 산림토목사업 하자검사 실시내역 명세

연도별	업종	사업지구	계약액 (백만원)	하자검사내역					
				2018년		2019년		2020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2018	사방	2018년 ○○ ○○지구 계류보전사업	153	-	○	×	×	×	×
2019	사방	2019년 ○○ ○○지구 계류보전사업	147	-	-	-	×	×	×
2020	사방	2020년 계류보전사업(○○ ○○)	134	-	-	-	-	×	○
2020	사방	2020년 사방댐 설치사업(○○ ○○)	123	-	-	-	-	×	○
2018	임도	2018년 ○○○○지구 간선임도 개설사업	155	-	○	×	×	×	×
2018	임도	2018년 임도보수사업(○○ ○○지구)	37	-	○	×	×	×	-
2018	임도	2018년 임도구조개량사업(○○ ○○지구)	44	-	○	×	×	×	-
2018	임도	2018년 임도구조개량사업(○○ ○○지구)	43	-	○	×	×	×	-
2018	임도	2018년 ○○○○지구 작업임도개설사업	97	-	○	×	×	×	-
2018	임도	2018년 임도 풀베기사업(○○○○지구)	15	-	○	×	×	×	×
2018	임도	2018년 ○○○○지구 간선임도 개설사업	111	-	-	×	×	×	×
2018	임도	2018년 임도 보수사업(○○ ○○)	43	-	-	×	×	×	×
2019	임도	2019년 임도구조개량사업(○○ ○○지구)	61	-	-	-	×	×	○
2019	임도	2019년 임도보수사업(○○○○지구)	23	-	-	-	×	×	○
2019	임도	2019년 임도보수사업(○○ ○○지구)	23	-	-	-	-	×	○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담보책임 존속기간 내의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무상 보수·수선기회를 상실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함평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함평군수는 사방사업 등 산림토목사업을 소홀히 한 지방녹지○급 ○○○과 지방녹지○급 ○○○을 훈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축산분야 보조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함평군(축수산과)

내 용

1. 업무개요

함평군은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사료용 기계·장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축산분야 보조사업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민간자본보조사업 전자입찰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하여야 하고,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거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민간보조사업자가 5천만원(2020. 2. 27. 2천만원으로 개정되기 전)을 초과하여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거나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조사료용 기계·장비 교부 결정 시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계약은 조달청장·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거나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계약

을 체결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축수산과)은 2018년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래 [표 1] “2018년 민간보조사업자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민간보조사업자가 전자입찰에 의한 계약체결이 아닌 농기계 유통업체와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별도의 조치 없이 보조금 정산을 완료하였다.

[표 1] 2018년 민간보조사업자 수의계약 명세

경영체명	주 소	보조금액 (천원)	계약방법	계약업체
계	2개 법인	149,600	2건	
○○○○영농조합법인	○○면 ○○○로	75,600	수의계약	○○○○(주)
○○영농조합법인	○○면 ○○길	74,000	"	(주)○○○○○○○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낙찰하한율 87.745%)와 비교하여 최대 18,334천원¹⁾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3. 중요재산 부기등기 미실시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부동산, 부동산의 종물, 기계·장비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 시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발부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기등기를 하고, 실적보고서에 부기등기를 한 등기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민간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발부하고 2018년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검토 시 부기등기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1) 수의계약 금액(149,600천원) - 경쟁입찰 시 금액(예정금액의 87.745%, 131,266천원) = 18,334천원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축수산과)은 2018년 축사시설 현대화(이월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래 [표 2]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부기등기 명세”와 같이 민간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중요재산을 부기등기 하도록 안내하지 않았고, 감사일(2021. 3. 3.)까지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2]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부기등기 명세

사 업 명	보조사업자	보조금액 (백만원)	추진기간	부기등기 여부
계	4명	516		4건
0000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월사업)	○○○	126	'18. 1. ~ 6.	미등기
	○○○	195	'18. 1. ~ 6.	
	○○○	77	'18. 1. ~ 12.	
	○○○	118	'18. 1. ~ 6.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시설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후관리 기간 내 임의 처분 등이 발생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함평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함평군수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축산분야 보조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 라 남 도

훈 계 요 구

제 목 국민신문고 민원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함평군(민원봉사실, 주민복지과)

훈 계 대 상 자 장성군 ○○면 지방사회복지○급 ○○○

내 용

1. 업무개요

함평군은 주민들이 생활불편신고 앱,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한 민원을 국민신문고로 통합 접수하여 조사·처리하고 있다.

지방사회복지○급 ○○○는 2019. 7. 9.부터 2020. 7. 27.까지 ○○○○과에서 국민신문고 민원부서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민원인은 제기한 민원에 대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은 14일 이내,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은 7일 이내, 건의민원은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민원처리 시 기한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은 2017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아래 [표] “함평군 7일 이상 민원처리 지연 명세”와 같이 20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처리기한을 짧게는 7일부터 길게는 60일까지 기간을 도과하여 처리하였다.

[표] 함평군 7일 이상 민원처리 지연 명세

연번	민원내용	접수일	처리기한	처리일	지연 일수	관련부서
계	20건					
1	코로나 관련 방역수칙 준수	2020-10-06	2020-10-15	2020-10-30	11	민원 봉사실
2	집단급식소 관련 법규 위반 여부	2020-09-09	2020-09-17	2020-10-30	27	민원 봉사실
3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차량	2020-08-05	2020-08-13	2020-11-06	56	주민 복지과
4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차량	2020-08-05	2020-08-13	2020-11-06	56	주민 복지과
5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차량	2020-08-05	2020-08-13	2020-11-06	56	주민 복지과
6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차량	2020-08-03	2020-08-11	2020-11-06	58	주민 복지과
7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차량	2020-07-31	2020-08-10	2020-11-06	59	주민 복지과
8	○○○ 앞 은행나무 3주 제거 요청	2020-07-31	2020-08-10	2020-08-21	7	산림 공원과
9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차량	2020-07-23	2020-07-31	2020-08-20	13	주민 복지과
10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차량	2020-07-20	2020-07-28	2020-08-20	15	주민 복지과
11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차량	2020-01-28	2020-02-05	2020-02-17	8	주민 복지실
12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차량	2020-01-20	2020-01-30	2020-02-17	11	주민 복지실
13	○○면 ○○구 이장선출에 관한 민원	2020-01-17	2020-01-29	2020-02-10	8	신광면
14	도로 파손	2018-02-09	2018-02-21	2018-03-05	7	안전 건설과
15	토지소유자에게 사전 고지없는 공익사업은 무효	2018-01-24	2018-02-01	2018-03-05	23	안전 건설과
16	저수지 조상 땅 보상	2018-01-08	2018-01-16	2018-02-06	14	안전 건설과
17	○○○번 버스이용시 급정차로 인해 허리를 다칩	2018-01-04	2018-01-12	2018-01-29	10	일자리 경제과
18	청소년보호법 위반 유해환경 신고	2018-01-02	2018-01-10	2018-01-26	13	주민 복지실
19	청소년보호법 위반 유해환경 신고	2018-01-02	2018-01-10	2018-01-26	13	주민 복지실
20	○○골프장 주소확인	2017-03-17	2017-03-27	2017-06-16	60	문화관광 체육과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함평군(주민복지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민복지과로 처리부서가 지정된 5건의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신고 민원’에 대해 민원부서담당자가 민원접수 당시 민원처리담당자가 부재 중이라는 사유로 민원처리담당자 지정을 소홀히 하여 짧게는 56일부터 길게는 59일까지 지연하여 처리하였다.

그로 인하여 부적정한 민원 처리 지연으로 민원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함평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함평군수는 민원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사회복지○급 ○○○를 훈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전라남도

훈계요구

제 목 물품 및 관급자재 등 구매계약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함평군(재무과, 안전건설과)

훈 계 대 상 자 ① 함평군 ○○○○실 지방기술○급 ○○○

② 함평군 ○○○○○사업소 지방시설○급 ○○○

③ 함평군 ○○○○과 지방시설○급 ○○○

④ 함평군 ○○○○과 지방행정○급 ○○○

⑤ 함평군 ○○과 지방행정○급 ○○○

내 용

1. 업무개요

함평군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가지 품목에 대해 [별표] “2017 ~ 2020년 1억원 이상의 물품 분할구매 명세”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1,224,120천원 상당의 물품을 분할구매 하였다.

지방기술○급 ○○○은 2017. 1. 2.부터 2020. 1. 6.까지 ○○○○과에서 관급자재 구매 담당과장으로, 지방시설○급 ○○○은 2017. 1. 12.부터 2018. 1. 18.까지 그리고 2019. 2. 12.부터 2021. 2. 3. 까지 ○○○○과에서 관급자재 구매 담당팀장로 근무하였으며, 지방시설○급 ○○○은 2018. 1. 15.부터 2021. 3. 3.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관급자재 구매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지방행정○급 ○○○은 2018. 8. 13.부터 2020. 7. 26.까지 ○○과에서 관급자재 계약 담당팀장으로, 지방행정○급 ○○○은 2018. 1. 15.부터 2020. 7. 26.까지 ○○과에서 관급자재 계약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이하 “업무처리기준”이라 한다) 제3조와 제5조에 따르면 다수공급자계약¹⁾이 체결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서 1회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1억원 이상인 물품을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서 구매할 때에는 5개 이상의 업체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이하 “2단계경쟁”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2단계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동일한 물품을 기준금액인 1억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구매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업무처리기준 제10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시 나라장터에 등록된 계약가격의 100분의 90까지 제안할 수 있어 2단계경쟁의 방법으로 구매하면 나라장터 등록가격보다 최대 10%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공공기관의 공통 수요품목으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이 맺어진 위 3가지 품목을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구매할 때에는 구매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2단계경쟁 방법으로 납품업체가 선정되도록 통합 발주하여야 하며, 구매금액을 1억원 미만으로 분할 구매하지 않아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재무과, 안전건설과)은 [별표] “2017 ~ 2020 1억원 이상의 물품 분할구매 명세”와 같이 내충격수도관 등 3가지 품목을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면서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품목임에도 2단계경쟁 방법에 의한 통

1) 조달청에서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의 면에서 동등하게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한 계약

합발주를 검토하지 않고 구매금액을 1억원 미만이 되도록 분할하여 나라장터에서 업체가 등록한 가격 그대로 구매하였다.

그 결과 업무처리기준에 맞지 않게 물품을 구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1억원 미만으로 분할 구매하여 나라장터 등록가격 그대로 구매함으로써 2단계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했을 경우(낙찰하한율 90%)와 비교하여 최대 122,412천원²⁾ 상당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함평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함평군수는 구매금액을 1억원 미만으로 분할 구매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한 지방기술○급 ○○○, 지방시설○급 ○○○, 지방시설○급 ○○○, 지방행정○급 ○○○, 지방행정○급 ○○○을 훈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별표] 생 략

2) 조달구매(예정금액의 100%, 1,224,120천원) - 2단계 경쟁입찰(예정금액의 90%, 1,101,708천원) = 122,412천원

전라남도

훈계요구

제 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연장허가 및 사후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함평군(안전건설과)

훈 계 대 상 자 ① 함평군 ○○○○실 지방시설○급 ○○○

② 함평군 ○○○○○과 지방행정○급 ○○○

내 용

1. 업무개요

함평군은 공적자원인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지방시설○급 ○○○은 2016. 7. 21.부터 2020. 1. 6.까지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지방행정○급 ○○○은 2018. 8. 13.부터 2020. 7. 28.까지 ○○○○과에서 지하수 업무를 총괄하는 건설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다.

2. 지하수개발·이용 연장허가 미처리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하수법」 제7조 및 제7조의3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허가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면 5년 기간으로 연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장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리고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도록 되어 있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타.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도록 고지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게는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안전건설과)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별표 1] “지하수개발·이용 연장허가 미 실시 명세”와 같이 총 98개소가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한 후 최소 약 1개월에서 최대 8년 8개월이 지났는데도 지하수개발·이용 수허가자에게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도록 고지하지 않았고 미 이행자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처분도 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3.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준공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의 설치도 및 그 밖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

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효력을 상실하고 시장·군수는 신고인에게 신고의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알리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한 자는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준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준공신고서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은 7일 이내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준공확인증을 발급토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 ‘과태료부과기준’ 2.개별기준에 따라 준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 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의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하며, 또한 1개월 이내에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안전건설과)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별표 2]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미준공 명세”와 같이 신고 또는 허가 수리 된 총 144건에 대하여 아직까지 준공처리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에게 효력 상실 통보(원상복구) 및 과태료 처분 등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

4.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 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는 수질검사 결과 그 수질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하수의 이용 중지 또는 수질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수질검사 대상은 생활용수로서 양수능력이 30톤/일 이상, 공업용수로서 양수능력이 30톤/일 이상, 농·어업용수로서 100톤/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주기는 준공 확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음용수는 2년(양수능력이 30톤/일 이하는 3년),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는 3년 주기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 2.개별기준 하.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 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 수질검사 결과 그 수질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하수의 이용 중지 또는 수질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안전건설과)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별표 3]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미이행 명세”와 같이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대상 29개소(농업용도 20개소, 생활용수 9개소)가 수질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행정처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로 인하여 공적 자원인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지 못해 모든 군민이 누려야 할 양질의 지하수 이용을 저해하였으며, 특히 솔선수범해야 할 지자체가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허가를 받지 않는 등 위법행위의 주체가 되었고 이는 행정기관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함평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함평군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연장허가 및 수질검사 등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지방시설○급 ○○○과 지방행정○급 ○○
○을 훈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별표 1] ~ [별표 3] 생 략

전라남도

징계·훈계·시정요구

제 목 여객자동차 종사자 관리 업무 부당 처리

관계기관(부서) 함평군(일자리경제과)

징 계 대 상 자 함평군 ○○○○○과 지방행정○급 ○○○

징 계 의 종 류 경징계

훈 계 대 상 자 ① 함평군 ○○과 지방행정○급 ○○○

② 함평군 ○○과 지방행정○급 ○○○

내 용

1. 업무개요

함평군은 여객운송 종사자격 미달자에 대한 여객운송 종사자격 취소 행정처분 및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 지원과 사후관리 등 업무를 하고 있다.

지방행정○급 ○○○은 2020. 1. 7.부터 2021. 3. 3. 감사일 현재까지 ○○○○○에서 택시 운송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방행정○급 ○○○은 2019. 7. 9.부터 2021. 1. 3.까지 ○○○○○과에서 여객자동차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지방행정○급 ○○○은 2017. 1. 13.부터 2018. 8. 13.까지 ○○○○○과에서 버스 운송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여객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3항에 따르면 관할 관청은 여객자동차 운송종사 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 해당시험 시행기관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대상자에게 운전자격증 등¹⁾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춘 자만 운전업무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20호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 여객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사업자에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별표 3] ‘사업면허 취소·사업등록 취소 및 사업정리 등의 처분 기준’에 따라 사업 일부 정지 90일(1차 위반), 감차 명령(2차 위반) 처분을 하거나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에 따라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게다가 같은 법 제94조 제2항 제6호에 따르면 위 종사자격을 갖추지 않고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에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5항에 따르면 군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교육세, 자동차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22조에 따르면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는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사용량 보다 부풀여서 유가보조금을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르면 시험시행기관(교통안전공단, 택시연합회)은 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운전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음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등을 포함하여 총 10가지의 행위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 제23조에 따라 상기 사항에 해당되어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것이 적발된 경우 유가보조금 환수,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1차 위반 6개월, 2차 위반 1년) 및 필요한 경우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3. 업무 담당자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

가. ○○○의 경우

2020. 1. 7.부터 2021. 3. 3. 감사일 현재까지 여객자동차(택시) 유가보조금 심사 및 지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조사와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다.

한편 함평군(일자리경제과)은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거래를 유형별로 자동 추출·제공하여 부정수급 조사 및 행정처리 절차를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담당자인 ○○○은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이

-
- 2)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2. 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3. 다른 사람 또는 업체가 구입한 연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4. 실제 주유·충전 받은 유종과는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5. 택시인 경우 부제일에 주유(충전) 받는 행위. 다만, 차량 출고, 가스용기 수리 및 교체, 비상수송 대책 등을 이유로 관할관청에서 부제를 해제한 경우 등 실제 운송사업용으로 유류를 사용한 경우 및 부제시작 후 다음 영업 준비를 위해 주유(충전)하는 경우로서 택시의 부제일 총 운행거리가 20km이내(관할관청에서 택시의 사업구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km이내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총 운행거리)인 경우 등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유가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관계서류를 제24조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폐기처분하는 행위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의2 및 94조의3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9.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10. 제16조 제2항 나목에 따른 거래내역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확인되면 이를 조사하여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 정지 등 운송사업자에게 행정상 제재와 필요한 경우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유형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명세”와 같이 지역평균거래량 2배 충전 12건, 2시간 이내 80리터 초과 충전 2건, 1일 120리터 초과 충전 5건, 사업구역 외 충전 57건 등 총 76건 (3,320천원)의 부정수급 의심 거래 내역 건이 있었음에도 단 한 차례도 시스템에 확인하지 않았을뿐더러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 건에 대한 사실 조사와 행정상 제재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다.

이에 대하여 ○○○은 유가보조금 지급 업무만 처리하고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 및 행정상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하는 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의 경우

2017. 1. 13.부터 2018. 8. 13.까지 여객자동차(버스) 허가 및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다.

한편 전라남도(도로교통과)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접수된 ‘여객운수회사 정보 및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 명단’³⁾을 함평군으로 통보하면서 운전적성 정밀검사 미수검자 및 운전면허 취소·정지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 그 결과를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담당자인 △△△은 전라남도에서 통보한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 명단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여객운송 종사자격 취소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했다.

그런데 △△△은 [표 1] “여객운송 종사자 자격미달 대상자 행정처분 미처리 명세”와 같이 자격미달 대상자 12명 중 6명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

3) 2017년 2월부터 함평군 15회 통보(道 도로교통과-00000호/2017. 4. 4.외 14)

[표 1] 여객운송 종사자 자격미달 대상자 행정처분 미처리 명세

연번	업체명	성명	통보일	처분사유	비고(담당자)
1	(유)○○○○관광	○○○	20170404	음주운전	○○○
2	(유)○○○○관광	○○○	20180202	음주운전	○○○
3	(주)○○○○관광	○○○	20170426	면허정지	○○○
4	(유)○○○○관광	○○○	20170622	면허정지	○○○
5	(유)○○○○관광	○○○	20170802	면허정지	○○○
6	○○○○	○○○	20190306	면허정지	○○○
7	○○○○	○○○	20190306	면허정지	○○○
8	○○○○	○○○	20200108	면허정지	○○○
9	○○○○	○○○	20200625	면허정지	○○○
10	○○○○	○○○	20171130	운전정밀검사 미수검	○○○
11	○○○○	○○○	20181024	운전정밀검사 미수검	○○○
12	○○○○	○○○	20191112	운전정밀검사 미수검	○○○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다. □□□의 경우

전라남도로부터 ‘여객운수회사 정보 및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 명단’ 공문을 통보받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여객운송 종사자격 취소’ 행정처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에 대한 사실 조사와 행정상 제재 조치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해당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함평군은 전라남도에서 통보한 ‘여객운수회사 정보 및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 명단’ 공문 일부를 확인하지 못해 행정처분 조치를 미이행하였으며, 여객자동차(택시) 유가보조금 역시 지급만 하고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와 행정상 제재 조치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을 인정하였다.

또한 앞으로 전라남도로부터 공문 통보 즉시 여객운송 종사자격 취소 행정처분을 하고, 매월 초 유가보조금 시스템에 접속하여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 건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 및 행정상 제재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징계요구 양정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내역 거래 처리 업무를 태만히 한 지방행정○급 ○○○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함평군수는

-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위반하여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가능하도록 방조한 지방행정○급 ○○○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하고(징계)
- ② 전라남도로부터 ‘여객운수회사 정보 및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 명단’을 통보받고도 여객운송 종사자격 취소 처분을 미이행한 지방행정○급 ○○○과 담당팀장으로서 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지방행정○급 ○○○을 훈계하며(훈계)
- ③ 여객운송 종사자 자격미달 대상자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여객운송 종사자격 취소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입력하시기 바라며,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거래 내역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 정지 등 행정상 제재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4] 생 략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행정조치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함평군(환경상하수도과, 민원봉사실)

훈 계 대 상 자 ① 함평군 ○○○○실 지방환경○급 ○○○

② 함평군 ○○○○○과 지방환경○급 ○○○

③ 함평군 ○○○○○과 지방환경○급 ○○○

내 용

1. 업무개요

함평군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수리를 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 또는 필요조치 이행 사항 등을 지도·점검 하고 있다.

지방환경○급 ○○○은 2017. 1. 17.부터 2018. 8. 12.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관련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고, 지방환경○급 ○○○은 2018. 8. 13.부터 2019. 2. 10.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관련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으며, 지방환경○급 ○○○은 2019. 2. 11.부터 2021. 3. 3. 감사일 현재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관련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비산배출 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이하 “비산먼지 발생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별표 36] ‘행정처분의 기준’ 2-다-2)-가)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사용중지” 처분을 하고, 같은 법 제92조 제4의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위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3. 토석의 채취 사업장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신고 및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지도·점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행정처분을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환경상하수도과, 민원봉사실)은 2018년부터 감사일인 2021. 3. 3.현재까지 [별표]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명세”와 같이 토공사 및 건축공사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36개 사업장에 대하여 신고 여부 확인 및 위반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행정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그로 인하여 대기 오염 발생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를 발생시켰다.

관계기관 의견 함평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함평군수는

- ①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지방환경○급 ○○○, 지방환경○급 ○○○, 지방환경○급 ○○○을 훈계하고(훈계)
- ②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지도·점검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 략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함평군(재무과)

내 용

1. 업무개요

함평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표 1] “지방세 부과·징수현황”과 같이 지방세를 부과·징수하였다.

[표 1]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2018년	37,804	36,704	92	1,008
2019년	55,874	54,354	438	1,082
2020년	42,931	41,593	540	798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지방세 부과사항을 점검한 결과 [표 2] “지방세 부과(추징)누락 명세”와 같이 취득세를 186건 37,780천원을 부과(추징) 누락하였다.

[표 2] 지방세 부과누락 명세

(단위 : 천원)

세 목	부과대상	건수	부과(추징) 대상세액	비고
취 득 세 (도 세)	합 계	186	37,780	
	농업법인 소유 부동산	1	21,935	
	귀농인 소유 부동산	4	1,328	
	임시건축물	175	8,603	
	지목변경	5	1,398	
	특수관계자 거래 부동산	1	4,516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작성일(2021. 2. 25.) 기준 가산세 포함

2. 농업법인 취득 부동산 감면 사후관리 소홀

함평군은 ○○○○유통영농조합법인¹⁾이 법인설립일²⁾로부터 2년 이내인 '18. 12. 14. 영농을 목적으로 '학교면 ○○리(토지 3,850㎡, 건물 2,244㎡')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 취득세를 감면신청 하자, 세액 전부를 감면한 사실이 있다.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을 취득³⁾하는 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되,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100분의 100)하고, 같은 조 제2항에는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농업법인이 취득세 감면 부동산을 1년 이내 직접사용하지

1) 대표이사 : ○○○ 주사무소: 전라남도 함평군 ○○면

2) 법인설립등기일 : 20○○. ○. ○.

3)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않거나,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함평군(재무과)은 ○○○○유통영농조합법인이 당초 감면사유인 영농을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유통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감면세액 중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취득세 21,934천원을 추징하지 않고 있다.

[표 3] 취득세 면제 부동산의 감면목적 외 사용 명세

(단위 : 원)

과세대상	납세자	취득일	추징대상세액	사용용도
○○면 ○○리 (토지 3,850㎡, 건물 2,244㎡)	○○○ 유통영농 조합법인	2018.○○. ○○.	21,934,500	유통시설 (창고 등)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작성일(2021. 2. 25.) 기준 가산세 포함

3. 귀농인 농지감면 사후관리 소홀

함평군은 귀농을 목적으로 '18. 12. 13.과 12. 19.에 ○○○이 취득한 '함평읍 ○○리 ○○ 외 1필지와 '18. 10. 19.에 △△△가 취득한 '대동면 △△리 △△ 외 4필지의 취득세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부과하였다.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 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항 제1호에는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20km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귀농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3년 이

내에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밖으로 주소를 이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함평군(재무과)은 [표 4] “귀농인 감면부동산 취득세 추정대상 명세”와 같이 ○○○과 △△△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밖으로 주소를 이전을 했는데도 감면한 취득세 4건 1,327천원을 추정하지 않고 있다.

[표 4] 귀농인 감면부동산 취득세 추정대상

(단위 : 원)

연번	과세대상(토지)	납세자	취득일 (주소이전일)	추징세액	추징사유
계	4건			1,327,770	
1	함평읍 ○○리 ○○	○○○	2018.12.13. (2020.4.8.)	221,670	주소이전
2	함평읍 ○○리 ○○ 외 1	○○○	2018.12.19. (2020.4.8.)	154,750	“
3	대동면 △△리 △△	△△△	2018.10.19. (2020.8.9.)	23,980	“
4	대동면 △△리 △△ 외 3	△△△	2018.10.19. (2020.8.9.)	927,370	“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작성일(2021. 2. 25.) 기준 가산세 포함

4. 임시용 건축물 취득세 부과 누락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법」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임시용 건축물에 한하여, 임시용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정 과세표준 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함평군(재무과)은 [별표 1] “임시용건축물 취득세 추정 명세”와 같이 임시용건축물을 취득한 후, 해당 임시용 건축물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세의무자 170명이 취득세 175건 8,603천원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2021. 3. 3. 감사일 현재까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5. 지목변경 취득세 부과 누락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그 가액이 증가했는데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함평군(재무과)은 [표5] “지목변경 취득세 추정 명세”와 같이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어 토지 가액이 증가되었는데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그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5건, 1,398천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표 5] 지목변경 취득세 추정 명세

(단위 : 원)

연번	과세대상 물건지	납세자	지목변경내역				형질변경 준공일	추징대상 세액
			공부상		실제상			
			지목	가액	지목	가액		
	합계	5명						1,398,000
1	해보면 ○○리	○○○	전	13,000,000	대지	15,100,000	‘20.10.29.	66,000
2	손불면 ○○리	○○○	답	7,910,000	공장	9,020,000	‘20.12.04.	45,000
3	월야면 ○○리	○○○	답	18,500,000	대지	34,400,000	‘20.7.22.	579,000
4	학교면 ○○리	○○○	답	10,500,000	대지	18,600,000	‘20.6.23.	387,000
5	해보면 ○○리	○○○	답	17,900,000	대지	24,100,000	‘18.8.20.	321,000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작성일(2021. 2. 25.) 기준 가산세 포함

6.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취득세 과소 부과

농업회사법인 ○○○푸드(유)는 '20. 9. 25. "함평군 ○○읍 ○○리 토지(4,000㎡)와 건물(1,863㎡)"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공시된 가액으로 하며,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시장·군수가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신축가격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⁴⁾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결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푸드(유)가 특수관계인 ○○○과 거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결정,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함평군(재무과)은 ○○○푸드(유)가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인 728,040천원보다 176,921천원 적은 551,119천원으로 과소 신고한 후, 취득세 4,515천원을 과소납부하였는데도 2021. 3. 3. 감사일 현재까지 보통징수방법으로 부과·징수하지 않고 있다.

4)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① 임원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②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와 그 친족 ③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비소액주주 직원 등으로 규정함

[표 6]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취득세 과소부과 명세

(단위 : 원)

거래당사자			취득일	과세물건	과소신고액	추징액
취득자	매도자	관계				
농업회사법인 ○○○푸드(유)	○○○	대표 이사	2020.9.25.	(토지, 건물) ○○읍 ○○리	176,921,550	4,515,580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작성일(2021. 2. 25.) 기준 가산세 포함

그 결과 지방세 관련 법령에 따라 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세원을 누락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야기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함평군은 위 감사결과⁵⁾를 수용하며, 조속한 시일에 감사결과를 검토하여 부과(추징)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함평군수는 부과(추징) 누락된 취득세 37,779,260원을 부과(추징)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 략

5) 감사기간 중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대상 납세자로 확인된 ○○○○주식회사는 2021년 함평군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지방세 조사업무 수행(연관기업 통합조사, 중복조사 지양)을 위하여 금번 감사지적 사항에서 제외

- 추징대상 납세자: ○○○○주식회사
- 과세대상 물건지: 나산면 ○○리(토지 32,490㎡) / 과세물건 취득일: 2017. 9. 1.
- 추징대상 지방세: 취득세 등 23,762,020원(추징사유: 감면부동산 직접 미사용) ※ 2021. 2. 25. 기준 작성

전라남도

훈계요구 및 통보(시정완료)

제 목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함평군(민원봉사실)

훈 계 대 상 자 함평군 ○○○○실 지방시설○급 ○○○

내 용

1. 업무개요

함평군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자를 조사한 후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있다.

지방시설○급 ○○○은 2015. 1. 1.부터 2019. 10. 14.까지 ○○○○실에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의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위반사실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부과·징수¹⁾토록 되어 있고, 같은

1) 부동산실명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의신탁 등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개월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함

법 제7조, 제12조의2 양벌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북광주세무서 재산세과는 2019. 6. 1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자 통보” 공문²⁾(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 통보 공문” 이라 한다)을 통해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 자료’를 함평군에 통보하였으며 함평군 민원봉사실 담당자는 위 문서를 접수 후 담당팀장과 공람³⁾을 하였다.

[표] 부동산실명법 위반 통보 공문에 명시된 법령위반 혐의 내역

명의신탁자	명의 수탁자	1. 관련부동산 2. 부동산가액 3. 실거래가액	위반내용	1. 명의신탁일 2. 명의수탁자 양도일(기수시기) 3. 비 고
○○○(주) △△△	□□□	1. 함평군 ○○면 ○○리 2. 1,973,823,266 3. 2,500,000,000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 (명의신탁)	1. 2007.01.22. 2. 2018.07.24. 3. 골프장 등 사업을 영위하는 ○○○(주)가 농지법 등의 제 약으로 부동산 소유자를 □□□으 로 취득한 명의신탁임

※ 자료 : 북광주세무서(재산세과-000, 2019.0.00.) 통보내용 발췌

따라서 함평군은 북광주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자 ○○○(주)의 법령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지체없이 부과하고, 같은 법 제7조, 제12조의2에 따른 벌칙 부과를 위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함평군(민원봉사실)은 2019. 6. 13. 북광주세무서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 통보 공문을 접수하였으나, 해당 법령 위반 혐의자를 조사하여 과징금 부과 및 수사기관 고발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2021년 2월 함평군(민원봉사실)은 종합감사 사전조사기간에 전라남도 감사관이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뒤늦게 조사를 하였고, 2021. 2. 22. 본 감사 첫날 ‘○○○(주)’에 과징금 493,455,810원⁴⁾을 부과예고하는 처분사전통지서를

2) 북광주세무서 재산세과-000(2019.○.○○.)호

3) 접수자: 시설 ○급 ○○○(2019. 6. 당시 시설 ○급) / 공람자: 토지관리팀장 시설 ○급 ○○○

4) 과징금 산정내역 [별표] 참조

발송하였다.

그 결과 함평군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지 1년 8개월이 경과하여 처분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함평군은 위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명의신탁 및 감면여부 등을 검토하여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함평군수는

- ① 위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절차를 진행(2021. 2. 22.)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고**[통보(시정완료)]**
- ②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시설○급 ○○○을 훈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별표] 생 략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수익용 건축물 신축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미청구

관계기관(부서) 함평군(일자리경제과, 영농지원과, 산림공원과)

내 용

함평군은 최근 5년 내 “함평 ○○○○시설 현대화 사업” 등 3개 사업¹⁾과 관련한 건축물을 신축한 후 사업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을 세입처리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소홀

함평군은 [표 1] “함평 ○○○○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래와 같이 시장상가 및 지붕 등의 건축물을 신축하고 시장 상인들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수익을 영위하고 있다.

[표 1] 함평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명세

(단위 : 천원/㎡)

사업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준공일	사업규모	사업비	임대수익(기간 2020. 10. ~ 12.)		
					합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함평 ○○○○ 시설현대화사업	9,251 (1,282)	2020.9.15.	• 점포 41개소 • 노점 80개소	5,800,000	2,883	2,620	262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2020.12.31. 기준), 2021년 1 ~ 6월 임대수익 7,343천원 별도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르면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

1) 함평 ○○○○ 현대화 사업, 농산물 ○○○○ 지원센터 건립, ○○○생태공원 야영장 조성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²⁾가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등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³⁾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이 함평 ○○○○ 내 신축한 상가와 부지를 시장 상인들과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수익을 영위하는 경우, 함평 ○○○○은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대상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함평군은 임대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임대수익에 대한 100분의 10)를 신고·납부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함평군(일자리경제과)은 [표 1] '함평 ○○○○ 시설 현대화 사업 명세'와 같이 2020. 9. 15. 함평 ○○○○의 건축물 등을 준공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임차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2021. 3. 3. 감사일 현재까지 임차료의 부가가치세 262,000원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3.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때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19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서 부동산임대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면세

3) 2006. 2.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7. 1. 1.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됨

한편 함평군은 2019년 ~ 2020년에 '부가가치세 환급 미청구 명세'와 같이 6,278,152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건축비용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함평군은 부동산 임대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에는 수익사업용 건축물 및 야영장의 건축비용에 대한 매입세액(부가가치세)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함평군(일자리경제과 등 3개 부서)은 [표 2] “부가가치세 환급 미청구 명세”와 같이 수익사업용 임대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약 487,520천원⁴⁾이 발생하였는데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청구하지 않고 있다.

[표 2] 부가가치세 환급 미청구 명세

(단위 : 천원/㎡)

사업장명	관리부서	건축비 지급일	건축 면적	건축비 지급내역			비고 (업종)
				계	공급액	부가가치세 ⁵⁾ (환급청구대상)	
합계	3곳			6,278,152	5,790,631	487,520	
함평 ○○○○ 시설현대화사업 건축공사	일자리 경제과	2019. 9. 23. ~ 2020. 8. 4.	1,282	4,676,352	4,303,504	372,847	부동산 임대업
함평군 농산물 ○○○○○ 지원 센터	영 농 지원과	2019. 1. 15. ~ 2019. 4. 29.	996	1,432,865	1,333,550	99,315	부동산 임대업
○○○제 생태공원 야영장 (기반, 전기공사)	산 림 공원과	2019. 2. 19. ~ 2019. 10. 16.	1,601 ⁶⁾	168,935	153,577	15,358	부동산 임대업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e호조 지출내역 기준), 준공일 이전 해당 건축물의 신축비용만으로 산정

그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세입 총당할 수 있는 재원을 누락하여 열악한 지

4) 회계사(세무사) 협조를 받아 정확한 환급액을 산출 후 관할 세무서에 환급청구, 신고·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거나 세무서의 환급액 인정여부에 따라 환급액이 줄어들 수도 있음

5) 광주지방조달청으로부터 구매한 관급자재의 경우, e호조에 부가가치세 지급금액이 누락되어 확인 불가,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내용 확인 필요

6) 건축면적 구성: 잔디포장블럭 525㎡, 캠핑장 706㎡, 오수관 123㎡, 하수관 123㎡, 상수관 124㎡

방재정에 부담을 야기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함평군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빠른 시일 내 세입총괄 부서와 회계사 등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함평군수는 위 부동산의 매입 부가가치세 약 487,519,892원을 관할 세무서에 환급청구 하고, 앞으로 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시설투자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환급)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참고 1] ~ [참고 3] 생 략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과징금 부과·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함평군(일자리경제과)

내 용

1. 업무개요

함평군은 「자동차관리법」, 「화물(여객)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보받은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자에게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2.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미필) 과태료 부과 소홀

함평군은 2017. 7. 10.부터 2020. 2. 16.까지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동차 검사지연(미필) 104건을 통보받았다.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일정 기간¹⁾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장은 관내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²⁾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지

1) 일정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제74조 관련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을 말함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피견인 자동차 : 2년(신조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 4년)

-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 2년) 등

2)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별표2]

연한 차량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지연(미필)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함평군(일자리경제과)은 [별표 1] “타 자치단체 통보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미부과 명세”와 같이 49대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통보받았음에도 8,65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 과징금 미부과

함평군은 2017. 7. 27.부터 2020. 11. 18.까지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15건을 통보받았다.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24항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를 운송사업자의 차고지³⁾ 외 시설, 장소에서 밤샘주차⁴⁾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적발하는 경우, 같은 규칙 제27조 별표 2⁵⁾, 제30조 3⁶⁾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운행정지 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여부를 확인하고, 과징금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함평군(일자리경제과)은 [별표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차량 과징금 미부과 명세”와 같이 6대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대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제3호의 각목

- (가)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다) 공영차고지, (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마) 화물터미널,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4)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말한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5) 별표2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3호: 밤샘주차한 경우(위반차량 운행정지 5일)

6) 별표3 과징금 금액의 세부기준 1호: 밤샘주차한 경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반 20만원, 개별10만원)

상임을 통보받았음에도 1,200천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 과징금 미부과

함평군은 2017. 4. 24.부터 2020. 11. 19.까지 타 자치단체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여객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35건을 통보받았다.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해당 운수사업자를 사업정지 처분⁷⁾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시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5천만원 이하 과징금⁸⁾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객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차량’을 통보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3, 5에 따라 운행정지(1회 위반 : 3일, 2회 위반 : 5일)를 처분하거나, 과징금(1회 위반 : 10 ~ 20만원, 2회 위반 : 15 ~ 30만원)을 부과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함평군(일자리경제과)은 [별표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차량 과징금 미부과 명세”와 같이 2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대상임을 통보받았음에도 과징금 4,400천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등 지방행정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함평군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빠른 시일 내 과태료, 과징금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43조 제1항 ‘별표 3’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46조 제1항 ‘별표 5’

조치할 사항 함평군수는 부과누락된 과태료, 과징금 14,250,000원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3] 생략

전라남도

훈계·개선요구 및 통보·기관경고

제 목 환경보전기금 정산업무 태만

관계기관(부서) 함평군(환경상하수도과)

훈 계 대 상 자 ① 함평군 ○○○○○사업소 지방시설○급 ○○○

② 함평군 ○○○○○과 지방환경○급 ○○○

③ 함평군 ○○○○○과 지방환경○급 ○○○

④ 함평군 ○○○○○실 지방환경○급 ○○○

내 용

1. 업무개요

함평군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6개 마을에 [표 1] “연도별 폐기물매립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명세”와 같이 군비 221,375천원을 환경보전기금으로 지원하였다.

[표 1] 연도별 폐기물매립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명세

(단위 : 천원)

연도별	마 을 별 지 원 금 액						
	계	○○마을	○○○ 마 을	○○마을	○○마을	○○마을	○○·○○ 마 을
계	221,375	45,320	40,942	39,574	36,200	40,304	19,035
2020	101,375	22,660	21,018	19,445	18,100	20,152	-
2019	120,000	22,660	19,924	20,129	18,100	20,152	19,035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시설○급 ○○○은 2018. 7. 9.부터 2020. 1. 6.까지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지방시설○급 ○○○은 2020. 1. 7.부터 2021. 3. 3. 감사일 현재까지 ○○○○○과장으로 지방환경○급 ○○○은 2018. 8. 13.부터 2021. 3. 3. 감사일 현재까지 ○○○○○과 환경미화팀장으로, 지방환경○급 ○○○은 2018. 8. 13.부터 2021. 3. 3. 감사일 현재까지 ○○○○○과 폐기물매립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 사업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및 제32조의8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및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르면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그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3]¹⁾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여야 하고,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 영향권²⁾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지원방법은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는 법령 및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았어야 하며, 교부결정에 따른 교부조건대로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함평군은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함평군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이 당초 교부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1) 2020년의 경우

함평군은 함평읍 ○○마을 등 5개 마을에서 2020년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 사업비로 [표 2] “2020년 환경보전기금 교부신청 명세”와 같이 ○○ 목적의 소득증대사업을 위해 총 101,375천원을 교부 신청하자 2020. 6. 17. 교부결정³⁾하였다.

1) 1. 소득증대사업 : 농림수산물, 상공업시설, 관광산업, 2. 복리증진사업 :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도로시설, 향만시설, 상하수도시설, 교육문화시설, 환경위생시설, 운동오락시설, 전기통신시설, 그 밖의 시설, 3. 육성사업 : 컴퓨터·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 급식 지원 등 4. 그 밖의 사업 : 그 밖에 소득증대사업·복리증진사업·육성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
2) 간접영향권 범위 :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 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

[표 2] 2020년 환경보전기금 교부신청 명세

(단위 : 천원)

마 을 명	대표자	교부신청액	사업기간	사 업 계 획
계		101,375		
○○마을	△△△	22,660	‘20.4~12.	소득증대(○○)사업
○○○마을	△△△	21,018	‘20.4~12.	소득증대(○○)사업
○○마을	△△△	19,445	‘20.4~12.	소득증대(○○)사업
○○마을	△△△	18,100	‘20.4~12.	소득증대(○○)사업
○○마을	△△△	20,152	‘20.4~12.	소득증대(○○)사업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위와 같이 함평군으로부터 교부결정 통보를 받고 ○○마을 등 5개 마을(보조사업자)은 2020. 12월경(정산서에 날짜는 미기재) [표 3] “마을별 정산서 제출 명세”와 같이 총 106,080천원(보조 101,217, 자담 4,862)을 소득증대사업 일환으로 ○○를 구입한 것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서류를 제출하였다.

[표 3] 마을별 정산서 제출 명세

(단위 : 천원, %)

마 을 명	대표자	사업내용	사 업 비 정 산 내 역						정산보고 시 제 출 한 증빙서류
			계 획			실 적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계	5개소		101,375	101,375	0	106,080	101,217	4,862	
○○마을	△△△	○○	22,660	22,660	0	23,110	22,660	450	○○축협 발행 정산서
○○○ 마을	△△△	○○	21,018	21,018	0	20,860	20,860	0	
○○마을	△△△	○○	19,445	19,445	0	21,060	19,445	1,614	
○○마을	△△△	○○	18,100	18,100	0	20,490	18,100	2,390	
○○마을	△△△	○○	20,152	20,152	0	20,560	20,152	408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3) 함평군 환경상하수도과-00000호 “2020년 폐기물매립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비 교부알림(교부결정서 포함)”

그런데 함평군(환경상하수도과)은 종합감사 기간 동안(2021. 2. 23.과 2. 24.) ○○마을 등 5개 마을이 제출한 정산서류와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보조사업자들이 [별표 1] “2020년도 마을별 보조사업 내용 및 주요 지적사항 명세”와 같이 당초 교부목적과 다르게 ○○를 구입하지 않고 지원받은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데도 2021. 3. 3. 감사일 현재까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정산검사를 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당초 교부목적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2) 2019년의 경우

함평군은 함평읍 ○○마을 등 6개 마을에서 2019년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 마을 주민지원 사업비로 [표 4] “2019년 환경보전기금 교부신청 명세”와 같이 ○○목적의 소득증대사업과 △△사업을 위해 총 120,000천원을 교부신청하자 2019. 3. 29. 교부결정⁴⁾ 하였다.

[표 4] 2019년 환경보전기금 교부신청 명세

(단위 : 천원)

마 을 명	대표자	교부신청액	사업기간	사 업 계 획
계		120,000		
○○마을	△△△	22,660	‘19.4~12.	소득증대(○○)사업
○○○마을	△△△	19,924	‘19.4~12.	소득증대(○○)사업
○○마을	△△△	20,129	‘19.4~12.	소득증대(○○)사업
○○마을	△△△	18,100	‘19.4~12.	소득증대(○○)사업
○○마을	△△△	20,152	‘19.4~12.	△△사업
○○마을	△△△	19,035	‘19.4~12.	소득증대(○○)사업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위와 같이 함평군으로부터 교부결정 통보를 받고 ○○마을 등 6개 마을(보조사업자)은 2019. 4. 9.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표 6] “마을별 정산서 제출 명세”와 같이 총 129,396천원(보조 120,000, 자담 9,396)을 소득증대사업 일환으로 ○○과 △△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서류를 제출하였다.

4) 환경상하수도과-00000호로 위 6개 마을에 2019년 폐기물매립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비 교부(교부결정서 포함)

[표 5] 마을별 정산서 제출 명세

(단위 : 천원, %)

마 을 명	대표자	사업내용	사 업 비 정 산 내 역						정산보고 시 제 출 한 증빙서류
			계 획			실 적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계	6개소		120,000	120,000	0	129,396	120,000	9,396	
○○마을	△△△	○○	22,660	22,660	0	22,760	22,660	100	○○축협 발행정산서
○○○ 마을	△△△	○○	19,924	19,924	0	21,060	19,924	1,136	
○○마을	△△△	○○	20,129	20,129	0	21,060	20,129	931	
○○마을	△△△	○○	18,100	18,100	0	22,110	18,100	4,010	
○○마을	△△△	△△	20,152	20,152	0	21,846	20,152	1,694	확인서
○○마을	△△△	○○	19,035	19,035	0	20,560	19,035	1,525	정산서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함평군(환경상하수도과)은 종합감사 기간 동안(2021. 2. 23.과 2. 24.) ○○마을 등 5개 마을(△△를 설치한 ○○마을은 제외)이 제출한 정산서류와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보조사업자들이 [별표 2] “2019년도 마을별 보조사업 내용 및 주요 지적사항 명세”와 같이 당초 교부목적과 다르게 ○○를 구입하지 않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데도 2021. 3. 3. 감사일 현재까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정산검사를 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당초 교부목적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함평군은 위 사업비는 지역주민들이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살아가고 있고, 그에 따른 보상차원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지속적으로 지원을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며,

관계법규 등 업무연찬을 통해 폐기물 주변마을 주민들이 지원 사업비를 법규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위 지원 사업비는 그 지역 대다수 주민들이 70~80대 고령으로 마을 공동사업이 매우 어려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환경보전기금은 「폐기물시설촉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조례」 제4조 및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기금의 설치목적과 관련이 없는 보상비 용도로 지원할 수 없는 점,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보조사업 정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당초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함평군수는

① 지방시설○급 ○○○, 지방환경○급 ○○○, 지방환경○급 ○○○, 지방환경○급 ○○○을 훈계하고(**훈계**)

②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환경보전기금은 「폐기물시설촉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되,

당초 교부 목적에 맞도록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군 또는 해당마을에서 직접추진(시설비,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주민건강 검진비 등)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며(**개선**)

③ 2019년과 2020년의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 사업비 정산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019년은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2020년은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과금을 부과·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통보**)

④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조례」 제4조 및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기금의 설치목적과 관련이 없는 보상비 용도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담당직원

교육과 더불어 해당마을에 대하여도 본 사업 취지와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 및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보조금 교부·집행, 정산검사 등 지도·감독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기관경고)

[별표 1] ~ [별표 2] 생 략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함평 ○○○ 전광판 구입·설치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함평군(재무과, 민원봉사실)

훈 계 대 상 자 ① 함평군 ○○과 지방행정○급 ○○○

② 함평군 ○○○○실 지방시설○급 ○○○

내 용

1. 업무개요

함평군은 지역특산물인 함평생비빔밥의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 ○○면 ○○
○ ○○사거리에 ○○○ 전광판을 설치(2020. 3. 3.)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방행정○급 ○○○은 2018. 1. 15.부터 2020. 7. 26.까지 ○○과에서 계약
업무 담당자로, 지방시설○급 ○○○은 2018. 11. 26. 부터 2020. 7. 26.까
지 ○○○○실에서 허가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공사, 물품이 혼재된 사업의 계약 체결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르
면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
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
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사, 용역, 물품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분할발주 여부와,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법령 준수 여부,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 시장의 경쟁제한 효과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예산절감과 공정한 경쟁, 그리고 최적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는 계약방법 등을 검토하고 계약목적물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 등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재무과)은 ○○○ 전광판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와 지지대 설치공사를 분리발주하여 시공 가능한 업체(철강구조물공사)가 수행토록 하여야 하나, 물품 계약으로 체결하여 ○○○ 전광판 제조업체인 ○○○○○○○(주)(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의 위 공사의 시공 가능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이를 수행토록 하였다.

그 결과 ○○○ 전광판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와 지지대 설치공사를 자격 있는 업체가 시행하였는지 알 수 없게 하였고, 동종의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잃게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3.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광고물 등(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의 공공목적의 광고물 등 포함)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 등을 표시·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4조를 적용하고, 다만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¹⁾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 전광판의 옥외광고물 허가 당시 해당 광고물의 설치 지역·장소가 「옥외광고물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원스톱허가과, 현 민원봉사실)은 관련부서(친환경농산과)로부터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2020.1.29.) 접수 당시 해당 ○○○ 전광판의 국도 등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설치 가능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2020. 2. 13. 승인 처리하였다.

그 결과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되어 공공목적의 광고물 등이 설치될 수 없는 지역에 ○○○ 전광판이 설치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시키는 등 지방행정의 신뢰를 손상시켰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함평군은 ○○○ 전광판 설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단서²⁾ 5호, 6호 및 9호에 따라 신청하여 승인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함평생비빔밥 홍보를 위한 해당 전광판의 설치 목적과 [별표] “함

1)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 등”을 열거

2) 5. 대기오염 항목의 측정결과와 날씨 정보 등을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6. 기상특보·강우량 등 기상정보, 안전문화 및 재난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난문자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9. 교통법규 위반 단속 또는 도로교통시설의 정비·점검업무를 수행 중인 차량에 해당 업무를 안내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내전광판 및 표시홍보물

○○○ 전광판 송출내역 등 명세”로 보아 실제로는 허가 당시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함평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함평군수는

- ① ○○○ 전광판 설치사업의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행정○급 ○○○,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지방시설○급 ○○○을 훈계하고
(훈계)
- ② ○○○ 전광판을 당초 허가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 략

전라남도

훈계요구

제 목 함평○○○극장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함평군(재무과, 축제엑스포사업소)

훈 계 대 상 자 ① 함평군 ○○○○과 지방시설○급 ○○○

② 함평군 ○○○면 지방행정○급 ○○○

내 용

1. 업무개요

함평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함평○○○극장 조성사업을 2020. 11월에 시작하여 2021. 1. 28.에 개장하였다.

지방시설○급 ○○○는 2020. 7. 27.부터 2021. 2. 2.까지 ○○○○○○○과에서 함평○○○극장 업무 담당자로, 지방행정○급 ○○○는 2019. 10. 1.부터 2021. 2. 2.까지 ○○○과에서 계약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분할 수의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르면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 공

사로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공사의 예산 편성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여성기업 등과 계약 체결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예산의 지출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공사 내용이 유사하고 공사기간 및 계약시기가 같거나 비슷한 공사들은 통합발주하여 2인 이상으로 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추진해서는 아니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문화관광체육과, 현 축제엑스포사업소)은 ○○○극장 조성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시기 등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사업 계획을 통해 단일 사업으로 일괄하여 발주가 가능함에도 [표 1] “○○○극장 조성 사업 분할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 설치 공사(19,900천원)와 △△ 설치 공사(계약금액 48,698천원)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각각 분할하여 같은 해 12. 28. 과 12. 30. 두 차례에 걸쳐 동일업체(○○(주))와 각각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자동차극장 조성 사업 분할 수의계약 명세

(단위 : 천원,%)

연번	공사명	예정금액	계약금액	낙찰율 (%)	계약일	준공일	계약상대자
계		73,998	68,588	96.00			
1	△△ 설치 공사	54,098	48,688	92	2020-12-30	2021-01-23	○○(주)
2	○○ 설치 공사	19,900	19,900	100	2020-12-28	2021-01-25	○○(주)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동종 업체에 대한 공정한 입찰 참여기회를 제한하였을 뿐만 아니라 2인 이상 경쟁 입찰을 했을 경우(낙찰하한율 87.745%)와 비교하면, 약 3,658천원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3.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 지연

함평군은 ○○○극장 □□ 공사를 위해 △△건설(주)과 19,809천원에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2020. 12. 30.)하였다.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2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해당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 공종의 삭제, 공정계획 및 시공방법의 변경 등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사의 본질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의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해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공사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연장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문화관광체육과(현 축제엑스포사업소), 재무과)은 당초 예기치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준공기한 내에 발생한 경우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설계변경을 하여야 했으며, 설계서대로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공사이행 중 공사 정지나 공사 연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사 정지,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1) 수의계약 금액(68,588천원) - 경쟁입찰(예정금액의 87.745%, 64,930천원) = 3,658천원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문화관광체육과, 현 축제엑스포사업소)은 공사 착공 후 준공 기한(2021. 1. 14.)이 임박한 시점에도 공사 이행을 촉구하지 않았고 기상악화와 폭설 등의 사유로 2021. 1. 14. 재무관에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1차, 2020. 12. 30. ~ 2021. 1. 27.)하였으나 재무관의 승인 없이²⁾ 부당하게 공사를 계속 추진하였다.

그리고 함평군(재무과)은 공사기간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공사기간 연장 승인 및 변경 계약 체결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으나, 함평군(문화관광체육과, 현 축제엑스포사업소)으로부터 공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 공문을 접수³⁾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공사물량 미반영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 부적정

함평군(문화관광체육과, 현 축제엑스포사업소)은 공사 착공 후 28일이 지난 시점에 실정보고 검토보고⁴⁾를 토대로 함평○○○ 극장 조성을 위한 현장 여건상 추가적인 공사가 불가피하다는 사유로 [표 2] “□□ 공사 설계변경 명세”와 같이 설계 변경하였고, 1차 공사 연장 기한인 2021. 1. 27.이 되어서야 재무과에 변경 시행 계약 의뢰⁵⁾하였다.

[표 2] □□ 공사 설계변경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계약금액	계약기간	사업내용	
			포장공(아스팔트덧씌우기)	부대공
당초	19,809	‘20. 12. 30. ~ ‘21. 1. 14.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8,200㎡	
변경 1차	19,809	‘20. 12. 30. ~ ‘21. 1. 27.	• 공사기간 연장 요청	
변경 2차	28,234	‘20. 12. 30. ~ ‘21. 2. 3.	24,183 (증)4,374	(증) 4,051
			• 아스팔트 노면절삭 : 0 → 4,870㎡ • 아스팔트표층포설 및 다짐 : 0 → 8,204㎡ • 택코팅 : 8,200㎡ → 8,204㎡	• 우수맨홀인상(700*700) 14ea • 우수맨홀인상(@648) 4ea • 우수맨홀인상(400*300) 6ea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기간 연장 요청(문화관광체육과-000(2021.○.○○.))에 따른 재무과의 공사 연장 승인 통보 및 변경 계약 체결 시행 통보 관련 문서 부재

3) 함평군 재무과-000(2021. ○. ○○.)

4) 함평군 문화관광체육과-온나라 문서등록대장 미등재로 문서번호 확인불가(2021. 1. 14.)

5) 함평군 문화관광체육과-0000(2021.○.○○.)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해당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 공종의 삭제, 공정계획 및 시공방법의 변경 등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사의 본질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의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문화관광체육과, 현 축제엑스포사업소)은 2020. 12. 30. 1인 견적으로 계약한 ‘□□ 공사’(당초 계약금액 19,809천원)는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통한 노면의 높이 변동과 그에 따른 맨홀 상승 등이 당초 계약 시 예견되었으나 공사 물량 산정에 누락시켰다. 이에 2021. 1. 14. 설계변경을 이유로 8,425천원을 증액하여(최종 계약금액 28,234천원) 1인 견적 수의계약 범위인 2천만원을 초과하여 변경 계약하는 등 수의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동종 업체에 대한 공정한 입찰 참여기회를 제한하였을 뿐만 아니라 2인 이상 경쟁 입찰을 했을 경우(낙찰하한율 87.745%)와 비교하면 약 3,461천원⁶⁾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5. 발주기관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 부적정

함평군은 “함평○○○극장 ○○○ 제작 및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해 2020. 12. 31. ○○○ 숲(대표자 ○○○)과 26,588천원에 수의계약⁷⁾ 체결하였다.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일 불과 6일이 지난 2021. 1. 6.조형물 설치에 따른 안정성 미확보를 이유로 함평군(문화관광체육과)에 계약해지를 요청⁸⁾하자 함평군(재무과)은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제1항 제7호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2021. 1. 13.계약을 해지⁹⁾하였다.

6) 수의계약 금액(28,234천원) - 경쟁입찰(예정금액의 87.745%, 24,773천원) = 3,461천원

7) ‘20.12.30.계약의뢰(문화관광체육과-00000)/예정가격 28,900천원/사업기간:’20.12.31.~ ‘21.01.29. (30일)

8) 함평군문화관광체육과-000(2021.○.○.)‘함평자동차극장 ○○○ 제작 및 설치 계약 해지 요청건’

9) ‘함평자동차극장 ○○○ 제작 및 설치 계약의 해지 통보’ 함평군 재무과-0000(2021. ○.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6조(계약의 원칙)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3-가”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은 수행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과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을 해제·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계약상대자의 계약 해지 요청 시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인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사유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계약 해지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재무과)은 계약상대자의 안전 실사 결과, 조형물 설치에 따른 안정성 확보가 되지 않아 향후 조형물 낙하 등 위험이 초래된다는 함평군(문화관광체육과)의 계약해지 요청¹⁰⁾만으로 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그 결과 함평군은 계약상대자와 2021. 1. 13. 계약을 해지하고 2021. 2. 9. 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기간을 지연시켰으며, 발주기관의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10) 함평군 문화관광체육과-000(2021.○.○.) ‘함평○○○극장 ○○○ 제작 및 설치 계약 해지 요청’

관계기관 의견 함평군은 업무 처리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향후 업무 추진 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함평군수는 ○○○극장 조성사업 변경계약 체결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시설○급 ○○○, 지방행정○급 ○○○를 훈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준공된 공사에 대한 하자 검사 미 실시

관계기관(부서) 함평군(재무과)

내 용

1. 업무개요

함평군은 2013. 5월부터 2017. 10월까지 “○○ 농공단지 주변 진입로 정비 공사” 등 220건 67,130백만원의 공사(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를 준공 처리 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는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존속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고,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목적물의 하자 3. 하자검사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 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사업에 대해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담보책임 존속기간 만료 전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재무과)은 감사기간 중 하자보증종료일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인 공사에 대해 점검한 결과, [별표] “하자검사 미실시 사업 명세”와 같이 하자보증종료일자가 2017. 3. 30.부터 2019. 9. 5.까지인 47건에 대하여 업무가 바쁘다는 사유 등으로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하자검사를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함평군은 예산이 투입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고,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된 공사의 경우 하자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상으로 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등 준공된 공사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함평군은 향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하자검사에 대하여 누락 및 관리 소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함평군수는 앞으로 공사 준공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계약법」 규정에 따라 연 2회 이상,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별도 하자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 및 정산검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함평군(주민복지과, 가정행복과)

내 용

1. 업무개요

함평군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관내 56개소 사회복지시설에 [표 1]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명세”와 같이 보조금 28,138백만원을 지급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였다.

[표 1]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명세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개소	보 조 금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56	28,138	6,076	6,789	7,231	8,042
노 인 복 지 시 설	21	1,432	369	357	348	358
장 애 인 복 지 시 설	7	7,111	1,237	1,680	1,942	2,252
아 동 복 지 시 설	16	9,670	2,116	2,289	2,499	2,766
어 린 이 집	12	9,925	2,354	2,463	2,442	2,666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1) 시설수급자 특별위로금 집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제6편 보장시설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설·추석 전월에 연 2회 지급하고, 반드시 보장시설 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공동의 행사경비 또는 선물

구입 비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수급자 개인에게 특별위로금을 직접 지급하는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가족행복과)은 [표 2] "시설수급자 특별위로금 미지급 명세"와 같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의 집’ 등 3개소에서 시설수급자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명절 특별위로금 2,691,200원을 개인별로 지급하지 않고 시설운영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는데도 실태 파악을 못 하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2] 시설수급자 특별위로금 미지급 명세

(단위 : 원)

연도	○○의 집			△△요양원			□□요양원			미지급액
	인원	설	추석	인원	설	추석	인원	설	추석	
계		465,400	1,032,200		441,600	574,600		141,600	35,800	2,691,200
2017	15	-	531,000	3	-	106,200	4	141,600	-	778,800
2018	27	465,400	501,200	7	-	250,600	1	-	35,800	1,253,000
2019	-	-	-	6	217,800	217,800	-	-	-	435,600
2020	-	-	-	6	223,800	-	-	-	-	223,800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 보조금 목적외 사용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제4장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 및 절차에 따르면 특수목적형 지원예산은 기본운영비 사용 기준 및 항목에 따라 집행하고, 특성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 인력인 신규종사자 인건비로 전액 지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특수목적형 지원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가족행복과)은 ○○아동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를 위반하여 [표 3] “○○아동센터 보조금 목적외 사용 명세”와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력이 아닌 센터장 수당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600,000원이 집행되었는데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3] ○○아동센터 보조금 목적외 사용 명세

(단위 : 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센터장 직책수당	3,6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지역아동센터 차량비 집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제4장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 및 절차에 따르면 시설명외의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시설운영시간에 시설운영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차량운행일지에 출발지(출발시각), 도착지(도착시각), 주행거리, 경유지 및 목적지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귀가지도 프로그램 등 시설운영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운행목적, 일지 등을 확인하여 차량 유류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차량유지비를 집행할 경우에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가족행복과)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아동센터’에서 적게는 15만원부터 많게는 62만원까지 주유소에 유류비 선결제 37회, 동일 시간대에 2회 이상 카드 결제 26회, 식재료 구입 등을 사유로 함평군 이외의 지역을 17회 운행하였는데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4)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적립금 미환수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게 되어 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근속기간 1년 미만으로 퇴직적립금의 수령이 불가할 때는 퇴직적립금 중 근속기간이 1년 미만 퇴직자의 퇴직적립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함평군 소재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근속기간 1년 미만 종사자의 퇴직적립금은 반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주민복지과)은 [표 4] “1년 미만 근무 종사자의 퇴직적립금 미반납 명세”와 같이 함평군○○○거주시설에서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 등 4명에 대해 보조금으로 지원한 퇴직적립금 5,990,401원을 2021. 3. 3. 감사일 현재까지 환수하지 않았다.

[표 4] 1년 미만 근무 종사자의 퇴직적립금 미반환 명세

(단위 : 원)

시설명	퇴직자	생년월일	입사일	퇴사일	미환수액
1개소	4명				5,990,401
함평군○○○거주시설	○○○	'59.11.12.	'17. 4.10.	'17.11.30.	2,256,651
	○○○	'63. 5. 7.	'17.12.11.	'18. 3.31.	1,257,240
	○○○	'73.12.10.	'18. 2. 1.	'18. 3.27.	559,080
	○○○	'76. 2. 28.	'19. 9. 1.	'20. 4.30.	1,917,430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3.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

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 내용 등에 적합하게 보조금 및 자부담 등이 사용되었는지 정산검사를 하여 보조금이 당초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보조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미제출 시 실적보고서 제출을 독촉하며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등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가족행복과)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별표 1] "어린이집 보조금 정산 현황 명세", [별표 2]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정산 현황 명세"와 같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54개 사업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또한 어린이집 15개 보조사업은 정산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 목적 달성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보조금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함평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함평군수는 특별위로금 2,691,200원을 시설수급자 개인별로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특수목적형 지원 사업비 3,600,000원과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5,990,401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2] 생략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2020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함평군(친환경농산과)

내 용

1. 업무개요

함평군은 2020년 한해 동안 농업인의 소득 안정, 식량생산 기능 수행, 정주 여건 개선 등 농촌사회 기능 유지 및 농업인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 7,405농가를 대상으로 197억원을 공익직접지불금으로 지원하면서 사후관리를 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인 등에게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하고, 기본직접지불금은 소규모 농가직접지불금과 면적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①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②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③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

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해당 농지가 농지 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 인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일시사용협의를 거친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여 농업경영 이행실태 점검 결과에 등록하는 등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친환경농산과)은 2020년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하면서 대상 농지가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를 거친 농지에 해당되는지를 지급대상자 선정 시 확인하지 않아 [별표] “2020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전용(일시사용) 농지 지급 명세”와 같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농지가 아닌 69필지, 172,585㎡, 38,960,460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함평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함평군수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농지에 지급한 38,960,460원을 회수하고, 매년 10월 중 농지전용부서로부터 농지전용과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내역을 확보하여 읍면에 배포하고 이를 기본직접지불금 이행점검실태 시 반영하여 기본직접지불금이 부당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 략

전라남도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 및 체육회 운영비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함평군(문화관광체육과)

내 용

1. 업무개요

함평군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2017년부터 2021. 3. 3. 감사 일 현재까지 함평군 ○○회(2018년까지 함평군 △△회)에 야구장 등 공공체육시설위탁금 446백만원¹⁾을 지원하고 있고, ○○회 사무실 운영 보조금 60백만원²⁾을 지원하고 있다.

2. 함평군 ○○회 회계담당자 재정보증보험 가입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 기준)

「지방회계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회계관계 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회계 관직 책임 범위 등을 고려하여 1천만원 이상의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이라고 되어 있다.

1) 민간위탁금(446백만원) : ('17년) 65백만원 ('18년) 69백만원 ('19년) 94백만원 ('20년) 94백만원 ('21년) 124백만원

2) 사무실 운영 보조금(60백만원) : ('17년) 12백만원 ('18년) 12백만원 ('19년) 12백만원 ('20년) 12백만원 ('21년) 12백만원

따라서 함평군은 함평군 ○○회의 장이 수입원 또는 지출원 등 회계담당자를 임명할 때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재산상의 손해를 대비하여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문화관광체육과)은 2017년부터 2021. 3. 3. 감사일 현재까지 함평군 ○○회가 [표]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명세”와 같이 회계관계직원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보조금 집행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명세

단체명	직급(직위)	성명	담당업무	회계관직	부적정내용
함평군 ○○회	회장	○○○	○○회 업무총괄	경리관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사무국장	○○○	○○회 운영 및 회계업무	분임경리관	"
	간사	○○○	○○회 운영 및 회계업무	지출원	"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3. 공공체육시설(야구장 등) 민간위탁금 정산 관리·감독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 기준)

「함평군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 협약서」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공공체육시설(야구장 등) 위탁관리에 따른 수입금은 군의 사전승인을 받아 위탁시설물의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수리비, 비품구입비 등에 사용하고 연말에 정산하여 남은 금액은 다음 해 1월말까지 군에 세입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협약서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운영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군에 익월 10일까지 실적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함평군 ○○회의 위탁관리 수입금에 대하여 익월 10일까지 보고받아 군의 사전승인 후 인건비, 운영비, 수리비 등에 사용하도록 해야 하고,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문화관광체육과)은 야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위탁 수입금³⁾을 군의 사전승인 없이 운영비 등에 사용하도록 방치하고 민간위탁금의 목적외 사용(1건)⁴⁾ 건에 대하여 2021. 3. 3. 감사일 현재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함평군 ○○회에서 보고된 월별 정산서에 대한 관리·감독을 2017년부터 2021. 3. 3. 감사일 현재까지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4. 함평군 ○○회 사무실 운영비 정산 관리·감독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 기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매년 지원되는 함평군 ○○회 사무실 운영 보조금이 관계 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 등에 따라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않도록 성실히 관리·감독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문화관광체육과)은 함평군 ○○회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목적외 사용한 3건⁵⁾에 대해 시정명령 및 환수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다음 해 2월까지 제출된 ○○회 사무실 운영 보조금의 정산 관리·감독도 소홀히 하였다.

그로 인하여 위탁 수입금 및 보조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수입금 내역(320백만원) : ('17년) 59백만원 ('18년) 62백만원 ('19년) 93백만원 ('20년) 106백만원

4) 목적외 사용(0.2백만원) : 야구장○○ ○○○ 명절휴가비 0.2백만원

5) 목적외 사용(0.3백만원) : ○○○ 병문안 0.1백만원, ○○○ 병문안 0.1백만원, ○○회 ○○○ 사고위로 0.1백만원

관계기관 의견 함평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함평군수는

- ① 사전승인없이 목적외 사용된 위탁금 및 보조금 500,000원을 회수하고, 함평군 체육회 회계관계직원에게 대하여 재정정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며(시정)
- ② 함평군 ○○회가 공공체육시설(야구장 등) 위탁관리에 따른 수입금은 군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도록 자체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전라남도

훈계요구

제 목 노인복지시설 행정처분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함평군(가족행복과)

훈 계 대 상 자 ① 함평군 ○○○○과 지방사회복지○급 ○○○

② 함평군 ○○○면 지방행정○급 ○○○

내 용

1. 업무개요

함평군은 관내 21개소 노인복지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사항 및 대상자 관리 등 조사·검사를 하면서 위반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징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사회복지○급 ○○○은 2018. 8. 13.부터 2021. 2. 2.까지(○○○○과)에서 노인복지시설 행정처분 업무 담당팀장으로, 지방행정○급 ○○○은 2017. 1. 12.부터 2020. 7. 26.까지 ○○○○과에서 노인복지시설 행정처분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5항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같은 법 제4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감경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시설 급여비용(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르면 군수는 같은 법 제35조 제5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 및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제2조에 따르면 인근지역에 급여유형이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이 없거나 수급자 정원의 충족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대체가 어려운 경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적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가족행복과, 前 주민복지실)은 2019. 10. 28. 함평○○○○원(대표 ○○○)으로부터 2019. 9. 24.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¹⁾에 대하여 입소자의 건강문제 등을 사유²⁾로 과징금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³⁾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행정청이 처분을 한 경우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에는 기존의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⁴⁾를 근거로만 2019. 11. 6. 함평○○○○원(대표 ○○○)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 42,000,000원으로 변경하여 처분하였다.

그로 인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변경함으로써 위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행정처분의 기회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 2019. 8. 9. 함평군은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5항을 위반한 함평○○○○원(대표 ○○○)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요청받고 2019. 9. 24. 함평군은 함평○○○○원(대표 ○○○)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함

2) 입소자를 타 시설로 전원조치하는 중 입소자의 건강문제와 보호자들의 불편함이 야기

3) 인근지역에 급여유형이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이 없거나 수급자 정원의 충족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대체가 어려운 경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내용 변경처분 취소[대법원 89누7061, 1990. 2.23.],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대법원 99두10520, 2000. 2.25.],

관계기관 의견 함평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함평군수는 노인복지시설 행정처분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사회 복지○급 ○○○, 지방행정○급 ○○○을 훈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함평군(가족행복과, 재무과)

훈 계 대 상 자 ① 함평군 ○○○○과 지방사회복지○급 ○○○

② 함평군 ○○○면 지방사회복지○급 ○○○

③ 함평군 ○○○과 지방행정○급 ○○○

내 용

1. 업무개요

함평군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844,100천원(국비 211,025천원, 도비 189,922천원, 군비 443,153천원)을 지원하여 관내 375개소의 ○○당에 공기청정기 1대씩을 설치한 후 사후관리를 하였다.

지방사회복지○급 ○○○은 2018. 8. 13.부터 2021. 2. 2.까지 ○○○○과에서 ○○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업무 담당팀장으로, 지방사회복지○급 ○○○은 2015. 7. 1.부터 2019. 7. 8.까지 ○○○○과에서 ○○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업무 담당자로, 지방행정○급 ○○○은 2018. 1. 15.부터 2020. 7. 26.까지 ○○○과에서 계약사무 대행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보조금 교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당 공기청정기 보급계획」에 따르면 시·군에서는 ○○당 공기청정기 예산과목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여 직접 구입·설치하고 설치된 공기청정기는 물품관리대장에 작성하여 시·군에서 자체 관리¹⁾하도록 되어 있으며 필터교체 등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추진하려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했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권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진행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가족행복과, 前 주민복지실)은 ○○당 공기청정기를 직접 구입·설치하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없이 민간자본보조사업(이전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대한○○회 ○○○지회에게 ○○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당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를 군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표 1] “○○당 공기청정기 구입·설치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명세”와 같이 보조사업비로 487,500천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1) 공기청정기 내용연수 9년(조달청 고시 기준)

[표 1] ○○당 공기청정기 구입·설치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명세

(단위 : 원)

구 분	보조금 교부액(A)	합평균 집행액(B)	차액(A-B)
계	844,000,000	679,935,280	164,064,720 (반납 완료)
세 부 내 역	공기청정기 구입·설치 844,000,000(375대×2,250,667)	- 공기청정기 구입·설치 192,435,000(375대×513,160) -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487,500,000(5년×97,500,000)	

※ 자료 : 합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3. ○○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계약사무 대행업무 처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²⁾」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 결정 후 보조사업자가 계약 사무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 사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42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2019. 6. 14. 합평군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시한 입찰공고번호 20190618896-00 ‘합평군 ○○당 공기청정기 구매 및 설치’ 공고문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은 ①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기청정기를 제조 또는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공기청정기 공급업체의 경우는 제조사로부터 공기청정기 납품, A/S 및 기술지원이행 ‘공급자 약속서 및 기술지원 약속서’를 제출 ③자체유지보수 조직 보유한 자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합평군은 (사)대한○○회 ○○○지회로부터 ‘합평군 ○○당 공기청정기 구매 및 설치’에 대한 계약대행 요청 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다.

2)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재무과)은 ‘함평군 ○○당 공기청정기 구매 및 설치’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여 유효한 입찰을 진행해야 했는데도 자체 유지보수 조직 현황을 제출하지 않고 다른 업체³⁾의 유지보수 인력을 제출한 (주)○○○○(대표 ○○○)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2019. 6. 27. (사)대한○○회 ○○○지회에 낙찰자를 결정 통보하여 계약하도록 하였다.

그로 인하여 계약사무 대행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함평군은 (사)대한○○회 ○○○지회로부터 요청받은 ‘○○당 공기청정기 구매 및 설치’ 계약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격심사 시 제조사의 기술지원 약속서와 유지보수 약속서를 제출받았고 과업지시서에 계약체결 시 유지관리인력 보유현황 및 투입계획을 제출토록 명시하였다는 이유로 자체 유지보수 조직현황(유지관리인력 보유현황 및 투입계획) 제출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낙찰자를 결정 통보하여 계약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 적격심사 시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제출토록 명시하고 확인한 후 낙찰자를 결정 통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함평군의 주장처럼 적격심사 시 제조사의 기술지원약속서와 유지보수 약속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제조사의 유지보수 약속서만으로 자체 유지보수 조직을 보유한 업체라는 증빙은 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함평군수는 ○○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업무와 계약사무 대행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사회복지○급 ○○○, 지방사회복지○급 ○○○, 지방행정○급 ○○○을 훈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3) (주)○○○○의 유지관리인력 보유현황 및 투입계획을 제출함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사회보장급여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함평군(주민복지과, 민원봉사실)

내 용

1. 업무개요

함평군은 관내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지급 및 사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조사 업무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수급자는 소득·재산이 변동되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시장·군수는 매년 수급자에 대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수급자의 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각종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연금, 급여, 그 밖의 금품은 수급자의 실제소득¹⁾에 합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제3편 조사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자동연계²⁾되지 않는 참전유공자 지방자치단체 추가지원금, 이·통장 직책수당 등은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금액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수급자의 실제소득에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1)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받는 사적 이전 소득, 각종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공적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

2)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되어 수급자의 소득에 자동 반영되나, 지자체 지원금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되지 않아 별도의 조사 및 자료 입력 필요

한편 함평군은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매월 5만원(2020. 10월부터 매월 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연 1회 이상 수급자의 소득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현황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실제소득에 반영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주민복지과)은 정기적으로 지급된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복지대상자의 실제소득에 산정하지 않아 [표 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과다지급 명세”와 같이 2017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면에 거주하는 ○○○ 등 2명에게 생계급여 3,660,00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과다지급 명세

(단위 : 원)

대상자	주 소 (읍면동)	생년월일	함평군 지원금 실제소득 미산정현황		과다지급	
			구분	지급 기간	개월	금액
2명						3,660,000
○○○	○○면	00.00.00	참전유공자명예수당	'17. 3. ~ '21. 1.	47	2,430,000
○○○	○○면	00.00.00	참전유공자명예수당	'19. 3. ~ '21. 1.	23	1,230,000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사회보장급여 지급 업무 처리 부적정

1) 생계급여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제4편 급여의 실시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복지급여 신청을 성실하게 하였음에도 보장기관이 반영을 누락하

는 등 그 귀책사유가 보장기관에 있을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미지급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 이내에 미지급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복지급여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주민복지과)은 신규 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된 ○○면에 거주하는 ○○○ 등 3명에게 [표 2] “기초생활수급자 신규신청 생계급여 과소지급 명세”와 같이 6개월분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1,001,210원을 과소 지급하였다.

[표 2] 기초생활수급자 신규신청 생계급여 과소지급 명세

(단위 : 원)

연도	대상자	주 소 (읍면동)	가구 원수	최초신청일	월지급액	최초지급		과소지급	
						지급일	지급액	개월	금액
	3명							6	1,001,210
2019	○○○	○○면	1	'18.12.17.	262,110	'19.02.20	524,220	1	262,110
2019	○○○	○○읍	1	'19. 9.17.	212,110	'19.11.20	212,110	2	424,220
2020	○○○	○○면	1	'20. 3.30.	104,960	'20.06.29.	104,960	3	314,880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장제급여 미지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및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제4편 급여의 실시에 따르면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 조치를 실제로 실시하는 사람에게 1가구당 750,000원(2020년부터 800,000원)의 장제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장제급여 지급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 장제를 책임진 자가 장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장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주민복지과)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사망자 16명의 수급자 가족 또는 장례를 책임진 자에게 [표 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 미지급 명세”와 같이 총 12,300,000원의 장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부양가족이나 실제 장례를 책임진 자에게 적극적으로 장제급여 신청을 안내하지 않는 등 장제급여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3]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미지급 명세

(단위 : 원)

연도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	사망신고일	미지급	
						금 액	사유
소계	16명					12,300,000	
2017	○○○	00.00.00.	○○면	'17.12.28	'18.01.16	750,000	미신청
2018	○○○	00.00.00.	○○읍	'18.11.29	'18.12.27	750,000	"
	○○○	00.00.00.	○○면	'18.05.25	'18.06.11	750,000	"
	○○○	00.00.00.	○○면	'18.04.02	'18.04.05	750,000	"
	○○○	00.00.00.	○○면	'18.07.13	'18.07.16	750,000	"
	○○○	00.00.00.	○○면	'18.04.15	'18.04.25	750,000	"
	○○○	00.00.00.	○○면	'18.04.15	'18.04.25	750,000	"
2019	○○○	00.00.00.	○○읍	'19.02.23	'19.02.27	750,000	"
	○○○	00.00.00.	○○읍	'19.01.18	'19.01.29	750,000	"
	○○○	00.00.00.	○○면	'19.09.02	'19.09.05	750,000	"
	○○○	00.00.00.	○○면	'19.08.21	'19.08.23	750,000	"
2020	○○○	00.00.00.	○○읍	'20.08.01	'20.08.20	800,000	"
	○○○	00.00.00.	○○읍	'20.01.10	'20.01.14	800,000	"
	○○○	00.00.00.	○○면	'20.11.16	'20.11.30	800,000	"
	○○○	00.00.00.	○○면	'20.08.04	'20.08.10	800,000	"
	○○○	00.00.00.	○○면	'20.03.28	'20.03.31	800,000	"
	○○○	00.00.00.	○○면	'21.01.06	'21.02.04	800,000	"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주거급여 부당 지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9조 및 「주거급여사업 안내」

제4편 주거급여의 실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입원중인 경우 수급권은 인정하되 임차(주거)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 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수급자의 주거실태 등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1인 단독 주거급여 대상자가 3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한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과다 지급된 급여는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민원봉사실)은 주거급여 대상자 중 ○○면에 거주하는 ○○○ 등이 2017. 10. 14.부터 2018. 3. 26.까지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장기 입원에 따른 주거급여 지급을 중단하여야 했는데도 수급자 주거 변동사항을 제때 파악하지 못해 [표 4] "장기입원자 주거급여 부당 지급 명세"와 같이 4명의 수급자에게 총 1,161,600원의 주거급여를 부당하게 과다 지급하였다.

[표 4] 장기입원자 주거급여 부당 지급 명세

(단위 : 원)

연도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입원일	퇴원일	최종 지급일	부당지급	
							개월	지급액
	4명(5건)							1,161,600
2018	○○○	00.00.00.	○○면	'17.10.26	'18. 5.31	'20.12.20.	4	336,000
	○○○	00.00.00.	○○읍	'18. 6.12.	'19. 2.24.	'19. 2.20.	2	168,000
	○○○	00.00.00.	○○읍	'18. 7.23.	'19. 2.28.	'20. 6.20.	2	168,000
2019	○○○	00.00.00.	○○읍	'18. 7.23.	'19. 2.28	'20. 6.20.	2	176,400
2020	○○○	00.00.00.	○○읍	'19.12.10.	'20. 6. 8.	'20. 6.20.	3	313,200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주거급여 대상자 중 ○○면에 거주하는 ○○○에게 [표 5] “장기입원

자 주거급여 과소 지급 명세”와 같이 4개월에 해당하는 주거급여 336,000원을 과소 지급하였다.

[표 5] 장기입원자 주거급여 과소 지급 명세

(단위 : 원)

연도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입원일	퇴원일	미지급 기간	과소지급	
							개월	지급액
2018	○○○	00.00.00.	○○면	'17. 3. 20.	'18. 8.10.	'17. 4.~'18.10.	4	336,000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4) 장애인연금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장애인연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 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장애인연금 및 수당을 지급할 때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주민복지과)은 신규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읍 ○○○에게 [표 6] “장애인연금 과소지급 명세”와 같이 장애인연금 120,000원을 과소 지급하였다.

[표 6] 장애인연금 과소지급 명세

(단위 : 원)

연도	사업구분	대상자	주 소 (읍면동)	최초 신청일	월 지급액	최초지급		과소지급	
						지급일	지급액	개월	금액
2018	장애인 연금	○○○	○○읍	'19. 1.30.	40,000	'19. 4.19.	40,000	3	120,000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함평군은 과소지급분은 소급 지급하고 장제비, 주거급여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누락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함평군수**는 수급자 21명에게 과소지급된 생계·장제급여·장애인연금 13,757,210원을 추가지급하고, 과다지급한 6명에 대해 4,821,600원을 회수하며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보장급여 지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식품·공중위생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함평군(건강증진과)

훈 계 대 상 자 함평군 ○○○○과 지방사무운영○급 ○○○

내 용

1. 업무개요

함평군은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식품·공중 위생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하고 [표 1] “식품·공중위생업소 명세”와 같이 그 위생업소에 대하여 지도 관리를 하고 있다.

[표 1] 식품·공중위생업소 명세

(단위 : 개소)

총 계	식품 위생업소									공중 위생업소					
	소계	일 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유통 단란 주점	집 단 급식소 (위탁)	제 과 점	식품 제조 가공	즉석 판매 제조	기타	소계	숙 박 업	목욕 장	아·미 용	세 탁	건물 위생 관리
853	735	326	55	11	38	7	74	113	111	118	16	8	75	15	4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사무운영○급 ○○○는 2018. 2. 11.부터 2020. 1. 6.까지 ○○○○실에서 식품·공중위생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식품·공중위생업주 위생교육 미이수자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식품위생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공중위생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는 매년 소정의 위생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식품·공중 위생업소에 대하여 상시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업주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위생교육을 미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건강증진과, 前 민원봉사실)은 [표 2] "위생업소 위생교육 미수료 명세"와 같이 2018년 1개소, 2019년 1개소가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여 2021. 3. 3.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표 2] 위생업소 위생교육 미수료 명세

(단위 : 개소)

연도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신고)일
		2개소			
2018	휴게음식점	○○○○	○○○	함평읍 ○○길 ○○	'17. 1.17.
2019	유통전문판매업	△△△△	△△△	함평읍 △△길 △△	'16.12.16.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신규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 확인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즉석식품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운반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와 숙박업·목욕장·이미용·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후 영업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과 제10

항 및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영업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는 신고증을 교부 후 필요한 경우 시설 및 장비를 확인하여야 하고,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74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17호 및 「공중위생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장 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신규로 식품·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신고(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영업 신고증을 교부하고 식품접객업은 반드시 해당 업소에 대한 업종별 시설기준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신고사항과 시설이 다를 경우 위생업주에게 시설개수 명령 등 행정명령을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건강증진과, 前 민원봉사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식품접객업소 101개에 대해 영업 신고증을 교부하고 시설을 확인하여야 했으나 [표 3] “신규 식품접객업소 시설 확인 명세”와 같이 93개소만 확인하였으며 [표 4] “신고 식품접객업소 시설 미확인 세부 명세”와 같이 8개소에 대해서는 시설 확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

[표 3] 신규 식품접객업소 시설 확인 명세

(단위 : 개소)

구분	총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년		
	영업 신고	시설확인		영업 신고	시설확인		영업 신고	시설확인		영업 신고	시설확인		영업 신고	시설확인	
		확인	미확인		확인	미확인		확인	미확인		확인	미확인		확인	미확인
식품 접객업	101	93	8	16	16	-	21	19	2	30	24	6	34	34	-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표 4] 신고 식품접객업소 시설 미확인 세부 명세

연도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신고)일
2018	휴게음식점	○○○	○○○	함평읍 ○○길 ○○	2018.04.26.
2018	휴게음식점	○○○	○○○	함평읍 ○○로 ○○○	2018.10.25.
2019	일반음식점	○○○	○○○	해보면 ○○로 ○○○	2019.07.26.
2019	일반음식점	○○○	○○○	함평읍 ○○로 ○○	2019.10.17.
2019	일반음식점	○○○	○○○	함평읍 ○○길 ○○○	2019.12.24.
2019	일반음식점	○○○	○○○	함평읍 ○○로 ○○○	2019.12.24.
2019	집단급식소	○○○	○○○	학교면 ○○길 ○○○	2019.11.07.
2019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	해보면 ○○로 ○○○	2019.12.17.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신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1개월 이내 업종별 시설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표 5] “신고 식품접객업소 시설 확인 지연 명세”와 같이 4개소에 대해 짧게는 3일, 길게는 40일을 지연하여 확인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5] 신고 식품접객업소 시설 확인 지연 명세

(단위 : 일)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신고)일	시설조사	지연일
일반음식점	○○○	○○○	함평읍 ○○길 ○○○	'19. 3.21.	'19. 5.31.	40
일반음식점	○○○	○○○	함평읍 ○○길 ○○	'20. 9.28.	'20.11. 3.	5
일반음식점	○○○	○○○	함평읍 ○○길 ○○	'20.11.10.	'20.12.14.	3
휴게음식점	○○○	○○○	함평읍 ○○길 ○○	'20. 9. 7.	'20.10.22.	14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시설기준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생업소 이용자들에게 위생상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함평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함평군수는

①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도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사무운영○급 ○○○
를 훈계하고(훈계)

② 「식품위생법」 제41조를 위반하여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위생교육을 이수
하지 아니한 2명의 위생업소 영업주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101조에 따라
과태료를 각 200,000원(총 400,000원)을 부과·징수하며

③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미확인한 8개소에 대해 시설을 확인하시고 신규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시설
확인 처리기한을 준수하는 등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도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
시기 바랍니다.(시정)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수산분야 보조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함평군(축수산과)

내 용

1. 업무개요

함평군은 수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관내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수산분야 보조사업 125건, 6,554백만원을 지원¹⁾하고, 보조사업자가 취득하는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 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중요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3항에 따르면 중요재산의 처분승인권자는 보조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 추진실태와 중요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록·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자로부터 중요재산 현황을 제출²⁾받아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했다.

1) 사업지원(백만원) : ('17년) 35건 428백만원 ('18년) 21건 2,663백만원 ('19년) 21건 915백만원 ('20년) 48건 2,548백만원

2)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축수산과)은 보조금을 지원하여 취득한 [별표] “보조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현황 명세”와 같이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19개소, 내수면 어업인 창업지원사업 3개소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완료 후 중요재산 현황을 제출받지 않았고 그 중요재산의 관리실태 조사와 기록·유지도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각, 양도 등 보조사업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함평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함평군수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사업과 내수면 어업인 창업지원사업에 대해 조속히 관리실태 조사 및 기록·유지를 철저히 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식품위생감시원 위촉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함평군(건강증진과)

내 용

1. 업무개요

함평군은 건전한 식품위생 관리를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하여 위생업소 출입·검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등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식품위생법」 제33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거나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상태 점검, 관내 유통 중인 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 기준 위반 행위, 부정 불량 식품 등 수거검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반기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령 및 위해식품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그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 및 소속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활동 수당은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100일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

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소비자단체에서 추천받아 위촉하고 활동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건강증진과, 前 민원봉사실)은 소비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함평군 ○○○○모임 등 4개의 단체로부터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10명을 추천받아 2017. 1. 4.부터 2021. 3. 3. 감사일 현재까지 [별표 1] “소비자단체 소속이 아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명세”와 같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부적정하게 위촉하였다.

또한 [별표 2] “소비자단체 소속이 아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수당 지급 명세”와 같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활동수당 29,950,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자격이 없는 공무원을 식품위생감시원 부적정 임명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식품위생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식품 등의 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시·군에 위생업소 출입·검사·수거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무원 중에 식품위생 관련 자격¹⁾이 있는 자 또는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위의 자만으로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인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 식품위생 관련 2주 이상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식품위생감시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있는 자를 식품위생부서에 배치하여야 하고, 인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 2주 이상의 식품위생 교육을 받은 자를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1) 위생사, 식품기술사·기사·산업기사, 수산 제조기술사·제조기사·제조산업기사 또는 영양사 등

그런데 함평군(건강증진과, 前 민원봉사실)은 2019. 7. 9.부터 2021. 2. 3. 까지 식품위생분야 관련 자격이 없는 지방보건○급 ○○○ 등 5명을 식품위생부서에 배치하여 식품위생 관련 소정의 교육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표] “무자격자 식품위생감시원 임명 명세”와 같이 식품위생감시원으로 부적정하게 임명하여 위생업소 출입·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표] 무자격자 식품위생감시원 임명 명세

직급	성명	생년월일	식품위생감시원 임명기간
지방보건○급	○○○	0000.00.00.	2019. 7. 9. ~ 2020.10.25.
지방시설○급	○○○	0000.00.00.	2020. 1. 7. ~ 2021. 2. 2.
지방보건○급	○○○	0000.00.00.	2020.10.26. ~ 2021. 3. 3. 감사일 현재
지방간호○급	○○○	0000.00.00.	2021. 2. 3. ~ 2021. 3. 3. 감사일 현재
지방보건○급	○○○	0000.00.00.	2021. 2. 3. ~ 2021. 3. 3. 감사일 현재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식품위생에 관한 올바른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보건 증진을 저해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함평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함평군수는 「식품위생법」 제32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정당한 자격을 갖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및 식품위생감시원을 임명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2] 생략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농업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 및 사후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함평군(친환경농산과)

내 용

1. 업무개요

함평군은 농업법인이 농업경영 이용 목적 등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면 영농계획서를 검토하고 신청농지에 대해 현지 확인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2. 농업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업무 처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농지법」 제6조 등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 등에 따르면 농업법인은 설립 요건¹⁾을 갖추어야 하고, 관할 군수는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3년마다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등을 조사하여 설립 요건을 못 갖춘 경우 시정명령 또는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1) (영농조합법인)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
(농업회사법인)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로 농업인 출자 지분이 1/10 이상일 것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요령」 제8조에 따르면 시·군·읍·면장은 농업법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시 매매거래 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하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상 목적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와 제19조에서 정한 사업범위²⁾를 벗어나면 농지의 소유권 취득 전 등기사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농업법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부동산 매매업 등 사업범위 외 사업이 명시되어 있으면 농지의 소유권 취득 전 등기사항을 변경하였는지 확인을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친환경농산과)은 [별표] “농지 취득한 농업법인 등기사항을 미변경한 법인 명세”와 같이 21개 법인이 농지 소유권 취득 전 등기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2021. 2. 25. 감사일 현재까지 사업범위 외 사업이 등기상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3. 농업법인 취득 농지 이용실태조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농지법」 제10조에 따르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군수와 읍·면장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을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기준은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최근 5년 이내 취득한 농지를 전수조사하며, 작물 재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

2) (영농조합법인 사업범위)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고, 투기목적 농지의 조사 등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농업법인이 최근 5년 이내 취득한 농지에 대해 이용실태 조사 기간에 농업경영 이행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친환경농산과)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64개 농업법인이 취득한 151필지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소홀히 하였고, 2021. 2. 25. 감사일 현재 37필지에 대해 이용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표] “농업법인 농지취득 및 이용실태 명세”와 같이 함평군 ○○면 ○○리 ○○○번지 등 6필지가 휴경, 함평군 ○○면 ○○리 ○○번지 등 6필지가 불법 임대와 되고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해 농지처분의무통지를 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표] 농업법인 농지취득 및 이용실태 명세

법인명	법인주소지	농지소재지	이용실태	취득세 감면여부
9개 법인		12개 필지		
○○○○○	전남 ○○	함평 ○○면 ○○리 ○○○	휴경	감 면
		함평 ○○면 ○○리 ○○○	휴경	감 면
○○○○○	전남 ○○	함평 ○○면 ○○리 ○○○	휴경	감 면
○○○○○	전남 ○○	함평 ○○면 ○○리 ○○○	휴경	감 면
○○○○○	전북 ○○	함평 ○○면 ○○리 ○○○	휴경	감 면
		함평 ○○면 ○○리 ○○○	휴경	감 면
○○○○○	전남 ○○	함평 ○○면 ○○리 ○○○	불법 임대	미감면
○○○○○	전남 ○○	함평 ○○면 ○○리 ○○○	불법 임대	감 면
○○○○○	전남 ○○	함평 ○○면 ○○리 ○○○	불법 임대	미감면
○○○○○	○○시	함평 ○○면 ○○리 ○○○	불법 임대	감 면
		함평 ○○면 ○○리 ○○○	불법 임대	감 면
○○○○○	전남 ○○	함평 ○○면 ○○리 ○○○	불법 임대	감 면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농업경영보다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려는 우려가 있는 농업법인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었고 농지 이용 효율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함평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함평군수**는 농업법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 시 사업범위 외 사업이 등기부등본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휴경과 불법임대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소유자를 청문하여 농지처분의무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 략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함평○○○○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함평군(친환경농산과)

훈 계 대 상 자 함평군 ○○○○○과 지방농업○급 ○○○

내 용

1. 업무개요

함평군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버섯 품목을 지역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함평○○○○영농조합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표 1] “함평○○○○영농조합법인 사업비 명세”와 같이 4개 사업에 3,861,700천원(국비 1,605,480, 도비 484,966, 군비 774,254, 자부담 997,000)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표 1] 함평○○○○영농조합법인 사업비 명세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비				
	합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총 계	3,861,700	1,605,480	484,966	774,254	997,000
2016~2017년 ○○산업기반 구 축 지 원 사 업	3,000,000	1,500,000	270,000	630,000	600,000
2019년 ○○○○ 생산시설 현 대 화 지 원 사 업	292,000	58,400	26,280	61,320	146,000
2020년 ○○○○ 생산시설 현 대 화 지 원 사 업	234,700	47,080	21,186	49,434	117,000
2020년 ○○○○기반활력화 지 원 사 업	335,000	-	167,500	33,500	134,000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농업○급 ○○○은 2018. 8. 13.부터 2021. 3. 3. 감사일 현재까지 ○

○○○○과에서 특용작물 생산시설과 원예생산기반 조성사업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시설·기계장비 등 공사계약 체결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¹⁾」 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²⁾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200호) 제53조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자가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계약대행 위탁하거나 교부 조건을 준수하면서 직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15. 민간자본이전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계약상대자 선정 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보조사업자가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시공·납품업체 선정 시 함평군에 계약대행을 의뢰하거나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여 직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업체를 결정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친환경농산과)은 보조사업자인 함평○○○○영농조합법인이 ○○산업기반구축사업 등 4개의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함평군에 계약 대행을 의뢰하지 않고 함평군 홈페이지에 사업 공고 후 업체를 선정하여 직접 수의계약 체결하였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면서도 「지방계약법」, 같은 법

1)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교육기관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자산 처분시스템,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

시행령, 시행규칙³⁾을 따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1. 2016~2017 ○○생산기반구축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사 신축공사와 기계시설 자동화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함평군 홈페이지에 2016. ○. ○.부터 2016. ○. ○○.까지 12일간 사업 공고를 통해 시공업체를 모집하였고 ○○재배사 신축공사의 경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대상⁴⁾이 아닌데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주)○○○○건설을 시공업체로 선정하였으며 기계설비자동화시설공사는 ○○산업기계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2. 2019 ○○○○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라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인 유닛쿨러 120개 교체사업을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여 공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냉동업체와 246,510천원에 수의계약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3. 2020 ○○○○ 생산시설 현대화·원예생산기반 활력화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르면 시공 실적 규모·양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공사 규모의 1/3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실적으로 제한하여야 하는데도 [표 2] “입찰 참가자격 과도한 실적제한 명세”와 같이 최근 5년간 30억원 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로 실적 제한하는 등 과도한 실적으로 입찰 공고하였으며 그 결과 2회 유찰되어 시공업체를 수의계약으로 결정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3) 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등의 이유로 물품·용역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표 2] 입찰 참가자격 과도한 실적제한 명세

(단위 : 천원, 개소)

사업명	입찰금액	입찰 참가자격	개찰결과
2020년 ○○○○ 생 산 시 설 현 대 화 지 원 사 업	270,000	- 최근 5년간 30억 이상 ○○농가 생산라인 자동화 기계 및 납품 실적을 보유한 업체	유찰(2회)
2020년 ○○○○ 기 반 활 력 화 지 원 사 업	336,600	- 최근 5년간 20억 이상 ○○○○포장기시설 제조 및 납품 실적을 보유한 업체	유찰(2회)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동종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잃게 하는 등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여 정산 시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보조사업자가 사업 시행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이 예상되면 사전 공제하여 집행하거나 재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친환경농산과)은 보조사업 시행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을 예상하여 사전 공제를 하거나 재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도록 안내를 하지 않았고 보조사업자인 함평○○○○영농조합법인이 2020년 ○○○○ 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에서 4,964천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 [표 3] “사업별 부가가치세 환급 명세”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총 10,485천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표 3] 사업별 부가가치세 환급 명세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사업내용	총사업비	총 환급 금액	보조율별 회수액
합 계			570,400	10,485	5,794.6
2020년 ○○○○ 생산시설 현 대 화 지 원 사 업	함평○○○○ 영농조합법인	냉동기, 자동수확기 등	235,400	4,964	2,482
2020년 ○○○○ 기반 활 력 화 지 원 사 업	함평○○○○ 영농조합법인	버섯자동포장기 등	335,000	5,521	3,312.6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목적외 용도로 사용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민간자본 보조사업 지도·감독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민간자본보조사업 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 등을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보조사업자가 민간자본보조사업 경비를 집행할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 등을 선정하였는지와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한 대로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적정한 업체가 선정되었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친환경농산과)은 2016~2017년 ○○생산기반구축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통보를 하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법령 및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을 명시하고도 보조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고 대행사업자를 선정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그로 인하여 ○○관련 시설·장비지원 보조사업에 대한 시공업체 계약이 투

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함평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함평군수는

- ① 함평○○○○영농조합법인이 추진한 2019년 ○○○○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농업○급 ○○○을 훈계하고(훈계)
- ②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액(10,485,000원) 중 보조비율에 따라 5,794,6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훈계요구

제 목 농산물 저장유통시설 관련 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함평군(친환경농산과)

훈 계 대 상 자 함평군 ○○○○○과 지방농업○급 ○○○

내 용

1. 업무개요

함평군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표 1] “농산물유통시설 등 시설·장비 보조금 지원 명세”와 같이 8개 법인에게 13,964백만원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하였다.

[표 1] 농산물유통시설 등 시설·장비 보조금 지원 명세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주요사업	보 조 금				
			합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합 계	8개 법인		13,964	4,741	1,174	3,338	4,711
2017 ○○○○○	○○○	저온창고, 선별기 등	3,000	900	270	630	1,200
2017 ○○○○○	○○○	저온창고, 선별기	952	286	85	200	381
2018 ○○○○○	○○○	저온창고	3,000	900	270	630	1,200
2018 ○○○○○	○○○	양파선별기, 창고개보수	700	210	63	147	280
2018 ○○○○○	○○○	벼 건조저장 시설 등	1,445	700	42	658	45
2020 ○○○○○	○○○	벼 건조저장 시설 등	1,500	600	90	210	600
2019 ○○○○○	○○○	저온창고, 지게차	1,992	597	179	418	798
2020 ○○○○○	○○○	저온창고, 파렛트	675	338		270	67
2020 ○○○○○	○○○	가공설비, 톤백	700	210	175	175	140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농업○급 ○○○는 2015. 1. 1.부터 2021. 3. 3.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등 식품산업육성 사업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농산물산지유통시설 등 농업분야 시설공사 계약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¹⁾」 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²⁾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2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자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15. 민간자본이전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계약상대자 선정 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보조사업자가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시공·납품업체 선정 시 함평군에 계약대행을 의뢰하거나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여 직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업체를 결정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친환경농산과)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지방계약법」을 따르지 않고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단체급식 식재료전자조달시스템,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

나-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

추정가격 2억원 초과하는 공사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미이용 공사계약 명세”와 같이 ‘나라장터’가 아닌 ‘누리장터³⁾ 또는 농협 아리오피스⁴⁾’에 입찰 공고하고 최저가 입찰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미이용 공사계약 명세

(단위 : 천원, %)

공고시스템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사업내용	추정금액	낙찰금액	낙찰률
	합 계	4개소		2,780,757	1,717,451	
누리장터	2018 000000	000	저온창고 개보수	294,200	256,962	87.3
	2018 000000	000	버건조 기계설비	889,160	519,608	58.4
	2019 000000	000	저온저장고	1,060,111	585,881	55.3
농협아리오피스	2020 000000	000	저온저장고, 선별장	537,286	355,000	66.0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나-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였으나 「지방계약법」을 따르지 않고 최저가 입찰한 경우

2017 000000사업 등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를 계약 체결할 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하였으나 [표 3] “최저가 입찰제 공사 계약 명세”와 같이 낙찰자 결정기준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87.745%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예정가격을 임의로 결정하거나 제시조차 하지 않았고 적격심사없이 최저가 입찰로 참여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3) 조달청에서 민간 수요(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의해 나라장터와 유사한 플랫폼을 제작하여 제공

4) 농협 기관 내부 인트라넷망으로 직원 이외에는 공고된 내용을 확인 할 수 없음

[표 3] 최저가 입찰제 공사 계약 명세

(단위 : 천원, %)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사업내용	추정금액	예정가격	적격심사	낙찰금액	낙찰률
	2개 법인		7,057,046			4,332,307	
2017 ○○○○○	○○○	저온창고	2,375,904	최저가	미 실시	1,661,000	69.9
2017 ○○○○○	○○○	저온창고	1,432,543	최저가	미 실시	879,000	61.3
2018 ○○○○○	○○○	보관창고	2,538,898	최저가	미 실시	1,325,407	52.2
2020 ○○○○○	○○○	도정공장	276,600	276,600	미 실시	249,900	90.5
2020 ○○○○○	○○○	벼투입 창고	433,101	267,000	미 실시	217,000	50.1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4개 사업이 나라장터에 공고되지 않아 동종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잃게 하는 등 특정업체에 특혜 제공과 최저가 입찰로 인해 부실 시공의 우려를 초래하였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3에 따르면 지원대상자는 사업주관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내에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2항 및 제5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계산서 등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실적보고서의 내용이 적정한지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와 제7조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총 공

사금액 4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⁵⁾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농산물산지유통시설 등 농업용 시설물 공사 완료 이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적보고서가 제출되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친환경농산과)은 2017 ○○○○○사업의 시공업체인 ○○건설 등 2개 업체에서 제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적보고서가 [표 4] “사업별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명세”와 같이 안전관리 물품 사진이 구입한 수량만큼 없거나 증빙된 사진 현장이 해당 사업장에 제공한 물품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사실 확인을 하지 않는 등 보조금 정산을 소홀히 하였다.

[표 4] 사업별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명세

(단위 : 천원)

사업명	시공업체	집행품목	사업비	주요사항
합 계	2개 법인		24,040	
2017 ○○○○○	○○건설주	안전화 등	9,240	안전화 등 수량 만큼 증빙사진 미첨부
2018 ○○○○○	○○산업주	안전화 등	14,800	증빙 사진 해당 사업장 확인 불가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함평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함평군수는 ○○○○○사업 등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농업 ○급 ○○○를 훈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공사(건축, 토목, 조경, 산업 환경 설비공사 등)에 적용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매년 2월경 발표하며, 공사금액 및 종류의 따라 계상 요율을 정하고 재료비(관급포함)+ 직접노무비 합계액의 2.93%,~1.33%까지 적용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함평군(민원봉사실)

훈 계 대 상 자 ① 함평군 ○○○○실 지방시설○급 ○○○

② 전라남도 ○○○○사업소 지방시설○급 ○○○

내 용

1. 업무개요

함평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2017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면 ○○○리 ○○ 외 2필지에 단독주택 부지 조성 등 2,603건의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하였다.

지방시설○급 ○○○은 2016. 10. 17.부터 2021. 2. 2.까지 ○○○○실에서 개발행위허가업무 담당자로, 지방시설○급 ○○○는 2017. 1. 16.부터 2018. 1. 11.까지 ○○○○과에서 개발행위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허가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허가 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허가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개발행위 허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기간 내에 연장이

되도록 미리 조치를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민원봉사실)은 감사일(2021. 3. 3.) 현재까지 [별표] “개발행위 허가기간 경과 명세”와 같이 총 70건의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짧게는 18일에서 길게는 1,351일이 경과되었는데도 청문절차 미이행 및 허가 취소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함평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출하지는 않았으며, 개발행위 허가기간이 경과한 관련자(사업주)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 후 소명자료 및 의견 등을 제출 받아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고,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함평군수는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경과된 허가 건에 대하여 허가 취소 등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시설○급 ○○○과 지방시설○급 ○○○를 훈계하고(훈계)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경과한 70건에 대하여는 허가 취소 등 개발행위 허가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 략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함평군(안전건설과)

훈 계 대 상 자 ① 함평군 ○○○○과 지방시설○급 ○○○

② 함평군 ○○○면 지방시설○급 ○○○

내 용

1. 업무개요

함평군은 “함평2교 도로교량” 등 87개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¹⁾(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대상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지방시설○급 ○○○은 2019. 2. 11.부터 2021. 3. 3.까지 ○○○○과에서 시설물안전관리 업무 담당자로, 지방시설○급 ○○○은 2017. 3. 1.부터 2020. 7. 26.까지 ○○○○○과에서 공동주택시설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시설물 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민간관리시설물 등록·관리 업무 처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시설물안전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시설물의 관리 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공공관리 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민간관리 주체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설물 관리계획을

1)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 (최초 1995. 4. 6.)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안전건설과)은 [표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명세”와 같이 2017년부터 2021. 3. 3. 감사일 현재까지 연도별 관리대상 총 325개 시설물 중 13개의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데도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이행하도록 안내·촉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시설물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표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명세

(단위 : 개소)

연 도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대상			수 립			미 수 립		
	소계	공공	민간	소계	공공	민간	소계	공공	민간
합 계	325	325	-	312	312	-	13	13	-
2017	76	76	-	76	76	-	0	0	-
2018	76	76	-	76	76	-	0	0	-
2019	86	86	-	78	78	-	8	8	-
2020	87	87	-	82	82	-	5	5	-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표 2]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대상시설 미등록 명세”와 같이 “함평 읍 ○○아파트” 등 8건의 공동주택 시설을 2021. 3. 3 감사일 현재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대상시설물로 지정·고시 또는 해지하지 않고 있으며,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FMS)에 현황 정보도 입력하지 않는 등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표 2]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미등록 명세

시 설 명	준공일	시행자	시설물기준 (1, 2, 3종)	미등록 사유	담당부서	비고
합 계	8건					
○○APT	1991. 2. 25.	○○건설	3종	-	민원봉사실 건축지도팀	
○○APT	1993. 12. 3.	○○건설	3종	-		
○○APT	2006. 12. 13.	○○주식회사 ○○건설	3종	-		
○○1차APT	2012. 12. 24.	○○건설	3종	-		
○○2차APT	2014. 10. 1.	주식회사 ○○○	3종	-		
○○APT	2015. 6. 8.	○○○	3종	-		
○○APT	2020. 6. 26.	○○자산신탁	3종	-		
○○APT	2020. 11. 24.	(유)○○○○	3종	-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시설물 정기·정밀점검 업무 처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시설물안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시설물의 관리 주체는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정밀점검 및 긴급점검 등의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되 정기점검은 안전 A등급은 반기에 1회, 그 외에는 1년에 3회 이상 실시하고,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표 3]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 명세”와 같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표 3]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 명세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자료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안전건설과)은 [표 4] “정기점검 실시 명세”와 같이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2017년 이후 총 484개 시설물 중 25개 시설물(3~7개/년)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자체 지도·점검을 하지 않는 등 시설물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표 4] 정기점검 실시 명세

(단위 : 회)

연 도	구 분	정기점검 대상			정기점검 실시			정기점검 미실시		
		소계	공공	민간	소계	공공	민간	소계	공공	민간
합 계		484	484	-	459	459	-	25	25	-
2017	하반기	76	76	-	76	76	-	-	-	-
2018	상반기	71	71	-	66	66	-	5	5	-
	하반기	76	76	-	69	69	-	7	7	-
2019	상반기	87	87	-	82	82	-	5	5	-
	하반기	87	87	-	82	82	-	5	5	-
2020	상반기	87	87	-	84	84	-	3	3	-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함평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출하지는 않았으며, 앞으로는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수립 및 정기점검 등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함평군수는

- ①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기존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및 ‘정기점검’ 등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 지방시설○급 ○○○을 훈계하고**(훈계)**
- ② 「시설물안전법」 총괄부서(안전건설과)에서 시설물 등록 및 안내에 관한 공문을 수차례(총44회) 발송하였는데도 대상시설물을 등록하지 않고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 지방시설○급 ○○○을 훈계하며**(훈계)**
- ③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미등록 시설물(민간시설 포함)에 대하여 조속히 등록하여 관리하고, 기존시설물에 대하여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설물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훈계요구

제 목 ○○ ○○○○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함평군(미래전략실)

훈 계 대 상 자 ① 함평군 ○○○○실 지방시설○급 ○○○

내 용

1. 업무개요

함평군은 2016. 7. 28. (주)○○(대표 ○○○) 외 1개사¹⁾와 “○○ ○○○○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금액 413,000천원)하고 2017. 10. 23.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본 공사 시행을 위하여 2018. 5. 31. △△건설(주)(대표 △△△)과 “○○ ○○○○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²⁾을 계약(금액 4,447,424천원)하고 2020. 8. 31. 준공하였다.

또한 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2018. 6. 11. 주식회사 (주)◇◇건설 기술공사(대표 ◇◇◇)와 “○○ ○○○○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을 계약(금액 829,091천원)하고 2020. 9. 30. 완료하였다.

지방시설○급 ○○○은 2019. 7. 16.부터 2020. 7. 26.까지 ○○○○과에서 ○○ ○○○○농공단지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1) (주)○○엔지니어링(대표이사 ○○○) 지분율 30%

2) 사업량 : 폐수처리시설 설치 600톤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을 사전검토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어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 정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미래전략실)은 감사일(2021. 3. 3.) 현재 “○○ ○○○○ 농 공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설치사업”의 설계도서와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설계에 반영된 세라믹메탈계 방수는 폐수의 화학적 성질에 대해 저항하도록 수조 부 벽면, 바닥면에 한하여 반영하고 오염수가 접하지 않은 수조 천장면 면적(614㎡)은 제외하여야 했으나, 전체방수 면적(3,974㎡)에 '세라믹메탈계 방수'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였다.

또한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주)◇◇건설기술공사 소속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이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과다 계상된 수량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준공 승인하여 결국 38,613천원 (제경비 포함)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함평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함평군수는 관련 법 검토 및 시공관리, 설계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과 관련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시설○급 ○○○을 훈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전라남도

훈계요구

제 목 소하천 정비사업 행정절차 미이행 및 공사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함평군(안전건설과)

훈계대상자 ① 함평군 ○○○○실 지방기술○급 ○○○

② 함평군 ○○○○실 지방시설○급 ○○○

③ 전라남도 ○○과 지방시설○급 ○○○

내 용

1. 업무개요

함평군은 「소하천 정비법」 제6조 규정에 따라 2003년부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군 관내 242개소(339.74km)의 소하천을 지정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2017년 함평군 소하천종합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하여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자연재해대비 및 소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기술○급 ○○○은 2016. 7. 21.부터 2020. 1. 6.까지 ○○○○과에서 하천업무 담당 과장으로, 지방시설○급 ○○○은 2017. 1. 12.부터 2018. 8. 12.까지 ○○○○과에서 하천업무 담당팀장으로, 지방시설○급 ○○○은 2016. 8. 2.부터 2019. 7. 8.까지 ○○○○과에서 하천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소하천 정비사업 행정절차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소하천 정비법」 제6조에 따르면 소하천 관리청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소하천 관리청은 종합계획수립 후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하천 관리청이 수립한 소하천 종합계획에는 소하천정비 기본방침, 재해예방 및 수질보전사항, 주민소득 증대사항과 투자 우선순위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소하천 정비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의4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소하천 설계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사업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비에 따라 행정안전부 또는 전라남도의 사전설계검토¹⁾를 받도록 되어있으며,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운영²⁾하고 있다.

【 사업 추진 절차 】

- ①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시장·군수) → ② 대상지 및 예산 확정(시장·군수) → ③ 설계검토 및 사업승인(도, 행정안전부) → ④ 사업시행(시장·군수)

※ 행정안전부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절차 재구성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안전건설과)은 감사일(2021. 3. 3.) 현재 “2017년 ○○소하천(2지구) 정비공사”등 7건의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상황을 살펴본 결과, 사업 사전설계검토, 시행계획승인,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의 경제성, 타당성 및 수리특성 등이 검토되지 못한 채 시공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2017년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재해예방 및 수질보전사항, 주민소득 증대사항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종합계획을 변경하고 절차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승인 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표 1] “소하천 정비공사 행정절차 미이행 명세”와 같이 후순위 대상지를 우선 시행하였으며 이로 인

1)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0000(2017. 00. 00.)호 「○○ ○○○○검토 운영계획 변경사항 통보」

2) 전라남도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근거법령 : 소하천정비법 제26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 구성 : 50명 - 임기 3년 <당연직(2), 위촉직(48)>

- 역할 : 공법의 선정 적정성, 경제성·타당성 검토, 소하천정비계획의 적정성, 유속 등 수리특성 검토 등

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행정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1] 소하천 정비공사 행정절차 미이행 명세

연 번	사업명	공사기간	계약 상대자	공사비 (천원)	지적내용	미이행 사유	투자 우선 순위
	7건			3,451,639			
1	○○소하천(2지구) 정비사업	2017. 3. 7.~ 2018. 5. 31.	○○○○	575,680	사전설계검토 미실시, 시행계획 미승인, 시행계획변경 미승인	조기집행 부진시군 패널티부여	6
2	○○소하천(3지구) 정비사업	2017. 6. 23.~ 2018. 7. 30.	○○○○	450,680	사전설계검토 미실시, 시행계획 미승인, 시행계획변경 미승인, 계약심사 미실시	조기집행 부진시군 패널티부여	16
3	○○소하천(2지구) 정비사업	2017. 12. 22.~ 2019. 5. 17.	○○○○	663,479	사전설계검토 미실시, 시행계획 미승인, 시행계획변경 미승인	조기집행 부진시군 패널티부여	17
4	○○소하천(2지구) 정비사업	2017. 6. 23.~ 2019. 4. 29.	○○○○	471,980	사전설계검토 미실시, 시행계획 미승인, 시행계획변경 미승인, 계약심사 미실시	조기집행 부진시군 패널티부여	15
5	○○소하천(3지구) 정비사업	2017. 6. 23.~ 2019. 4. 29.	○○○○	309,560	사전설계검토 미실시, 시행계획 미승인, 시행계획변경 미승인, 계약심사 미실시	조기집행 부진시군 패널티부여	18
6	○○소하천(2지구) 정비사업	2017. 6. 27.~ 2017. 12. 26.	○○○○	484,590	사전설계검토 미실시, 시행계획 미승인, 시행계획변경 미승인, 계약심사 미실시	조기집행 부진시군 패널티부여	3
7	○○소하천(3지구) 정비사업	2017. 6. 27.~ 2018. 11. 13.	○○○○	495,670	사전설계검토 미실시, 시행계획 미승인, 시행계획변경 미승인, 계약심사 미실시	조기집행 부진시군 패널티부여	24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소하천 정비사업 공사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소하천 설계기준」 및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지침」에 따르면 소하천정비 중

합계획과 시설기준에 부합되게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하천 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독마루의 콘크리트포장 등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추진과 관련한 내용은 하천관리시스템에 사업추진현황을 입력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안전건설과)은 감사일(2021. 3. 3.) 현재 “2017년 ○○소하천(2지구) 정비공사” 등 6건의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본 결과, 당초 사업승인내용과 다르게 소하천 정비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급수관로 설치, 도로 확장, 주택 진입로 포장, 개거설치 등을 추가로 설계변경 반영하여 [표 2]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명세”와 같이 총 174,812천원(제경비 포함)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표 2]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명세

연번	사업명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공사비 (천원)	지적내용	금 액 (천원)	비고
계	6건			2,979,659		174,812	
1	○○소하천(2지구) 정비사업	2017. 3. 7.~ 2018. 5. 31.	○○○○	575,680	농로 포장(161m→325m) 수로관설치(28m→114m)	19,102	낭비
2	○○소하천(3지구) 정비사업	2017. 6. 23.~ 2018. 7. 30.	○○○○	450,680	취입보 설치(1개소) 접속도로 포장 등	11,578	낭비
3	○○소하천(2지구) 정비사업	2017. 12. 22.~ 2019. 5. 17.	○○○○	663,479	농로 확포장(3.0m→3.5m) 개거 설치, 주택 진입로포장	8,345	낭비
4	○○소하천(3지구) 정비사업	2017. 6. 23.~ 2019. 4. 29.	○○○○	309,560	급수관로 설치(102m) 도로포장 및 가드레일	34,212	낭비
5	○○소하천(2지구) 정비사업	2017. 6. 27.~ 2017. 12. 26.	○○○○	484,590	도로 포장 314m 호안블록 추가설치 107㎡	32,012	낭비
6	○○소하천(3지구) 정비사업	2017. 6. 27.~ 2018. 11. 13.	○○○○	495,670	호안블록 추가설치 168㎡ 수로관 설치 400m 농로 포장 198m	69,563	낭비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함평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함평군수**는 「소하천 정비법」 규정에 따라 소하천 종합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취하지 않고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지침」의 규정에서 정한 소하천과 직접관련이 없는 공사를 설계변경에 반영하여 예산을 부당집행한 지방기술○급 ○○○, 지방시설○급 ○○○, 지방시설○급 ○○○를 훈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 등록 및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함평군(미래전략실, 문화관광체육과, 축수산과, 안전건설과, 보건소)

내 용

1. 업무개요

함평군은 2017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5일시장 연결도로 정비 및 주차장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48건의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였다.

2.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 등록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¹⁾”에 등록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함평군 또는 다른 발주기관이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위 시스템에 등재된 내용을 활용하여 용역수행실적, 업무중복도 등의 평가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전라남도(지역계획과)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등재 요청 공문을 접수받았고 같은 내용을 2015년부터 총 4회²⁾에 걸쳐 시·군에 통보하였다.

1)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야 건설기술용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14. 5. 23. 이후 용역실적은 이 시스템에 입력된 결과만 인정토록 하고 있음

2) 지역계획과-0000(2015.00.00.), 지역계획과-0000(2017.00.00.), 지역계획과-0000(2017.00.00.)
지역계획과-0000(2018.00.00.)

따라서 함평군은 건설기술용역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준공한 경우에 10일 이내 그 사실을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에 등재하여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과 업무중복도 평가업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미래전략실 등 5개 부서)은 감사일(2021. 3. 3.) 현재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사항을 살펴본 결과, [별표]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미등록 명세”와 같이 “함평군 ○○○○센터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준공일(2018. 1. 19.)로부터 1,139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등 21건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등록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통합관리시스템에 관련 자료 적기 미등재로 건설기술용역 실적이 불인정되어 신규로 발주되는 다른 건설기술용역의 적격자 선정 시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우려를 초래하였다.

3. 지반 조사결과 전산화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46조,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지반조사가 수반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전산화³⁾ 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미래전략실 등 5개 부서)은 감사일(2021. 3. 3.) 현재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 등록여부를 살펴본 결과 [표] “지반조사용역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 미등록 명세”와 같이 11건의 지반조사용역이 준공되었으나 현재까지 5건의 지반조사 결과를 전산화하지 않고 있다.

3)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www.geoinfo.or.kr) : 국토교통부는 전국토의 지반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활용을 위하여 2003년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지반정보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 중임

[표] 지반조사용역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 미등록 명세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업체	지반 조사량	시스템 등록일	담당부서	비고
○○○○	2018. 12. 10.~ 2019. 2. 7.	○○○	6공	-	문화관광체육과 관광팀	
○○○○	2018. 5. 2.~ 2018. 6. 4.	○○○	4공	-	문화관광체육과 체육시설팀	
○○○○	2020. 5. 1.~ 2021. 3. 1.	○○○	11공	-	축수산과 해양수산팀	
○○○○	2018. 12. 26.~ 2022. 5. 29.	○○○	16공	-	안전건설과 복구지원팀	
○○○○	2018. 12. 26.~ 2022. 5. 29.	○○○	10공	-	안전건설과 복구지원팀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시추를 통해 조사 된 지반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반정보공유의 활성화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함평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함평군수는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따라 기 실시한 건설기술용역과 지반조사결과를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 및 “지반조사용역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에 등록하고, 앞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제때에 전산화 입력·관리를 함으로써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과 업무중복도 평가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 략

전라남도

훈계요구 및 통보

제 목 건축물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 허가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함평군(민원봉사실)

훈 계 대 상 자 함평군 ○○면 지방시설○급 ○○○

내 용

1. 업무개요

함평군은 「건축법」 제11조 내지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면 ○○리 ○○○번지 등 1,753건의 건축허가(신고 및 용도변경)를 처리하였다.

지방시설○급 ○○○은 2017. 3. 1.부터 2020. 7. 26.까지 ○○○○○과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 처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축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국토교통부령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축법」 제5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르면 공장과 창고²⁾용도의 마감재료 중 복합자재³⁾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재 공급자는 복합자

1)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2) 창고 - 바닥면적 600㎡ 이상

제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시공자에게 제출하고, 시공자는 제출받은 품질관리서와 제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품질관리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감리자는 제출받은 품질관리서를 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다.

한편 최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⁴⁾ 등은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 사용 등이 주요 원인으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건축자재의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주요 자재의 성능을 검수하고 시공상태 확인 및 감리일지 작성 등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가 제출한 품질관리서 등 관련 서류를 성실하게 검토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⁵⁾는 2015. 10 .7. 복합자재 기준을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능을 갖추고 강판 두께는 0.5mm 이상으로 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여 강화하였고 건축자재에 대한 건축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자재를 생산 유통하고 불량 시공하는 사례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건축법」 제52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민원봉사실)은 [표 1] “복합자재품질관리서 미제출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명세”와 같이 총 3건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처리 시 품질관리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철저한 검토 확인 없이 사용승인 처리하였다.

3) 불연성 재료인 양면 철판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인 심재(心材)로 구성된 자재

4) 제천 복합건물(2017. 12. 21. 사망 29명), 밀양 세종병원(2018. 1. 26. 사망 44명)

5) 건축자재 등 품질관리실태 안전감찰 결과 - 행정안전부(2019. 2.)

[표 1] 복합자재품질관리서 미제출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명세

(단위 : m²)

연번	건축주	위 치	건 축 허가일	사 용 승인일	규 모		감리업체 (대표자)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여부 (O, X)	난연성능 시험 성적서 제출 여부 (O, X)	강판두께및 아연도금량 기재된시험 성적서 (O, X)
					건축물 용 도	연면적				
1	○○○	○○면 ○○리 ○○○ 외 4필지	2017. 6. 28.	2018. 11. 26.	공장	4,076	○○건축사 사무소 (○○○)	x	o	o
2	○○○	○○면 ○○리 ○○○	2019. 6. 18.	2019. 11. 25.	공장	1,288	○○건축사 사무소 (○○○)	x	x	x
3	○○○	○○면 ○○리 ○○○	2019. 6. 26.	2020. 3. 4.	공장	6,636	○○건축사 사무소 (○○○)	x	x	x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3.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업무 처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축법」 제19조에 따르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축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노유자시설 건축물의 거실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건축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민원봉사실)은 [표 2] “실내 마감재료표 미제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처리 명세”와 같이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시 실내재료 마감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총 2건에 대하여 검토·확인없이 용도변경 허가 처리하였다.

[표 2] 실내 마감재료표 미제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처리 명세

(단위 : ㎡)

연번	건축주	위 치	용도변경 허 가 일	사 용 승인일	용도변경		용도변경 바닥면적	설계업체 (대표자)	실내 마감재료표 제출여부
					변경전	변경후			
1	○○○	○○읍 ○○리 ○○○	2019. 6. 18.	2019. 8. 2.	재·증·근린 생활시설	노유자 시 설	595.74	○○건축사 사무소 (○○○)	부
2	○○○	○○읍 ○○리 ○○○	2019. 9. 6.	2019. 10. 14.	재·증·근린 생활시설	노유자 시 설	361.55	○○건축사 사무소 (○○○)	부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함평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건축물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 허가 관련자에게 관련사항을 통보 후 소명자료 및 의견 등을 제출받아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함평군수는

- ① 「건축법」 규정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 허가 시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시설○급 ○○○을 훈계하고(훈계)
- ② 자재 품질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지 않는 등 「건축법」 규정에 위배되게 공사 감리업무를 소홀히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를 「건축사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징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며(통보)
- ③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시 실내 마감재료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건축법」 규정에 위배 되게 용도변경 허가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를 「건축사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징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전라남도

훈계요구

제 목 함평 ○○○○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함평군(일자리경제과, 재무과)

훈 계 대 상 자 ① 함평군 ○○○○실 지방행정○급 ○○○

② 함평군 ○○○○○과 지방행정○급 ○○○

내 용

1. 업무개요

함평군은 ○○종합건설(주)(대표이사 ○○○)와 2019. 9. 17. 계약 체결하고 2020. 9. 15. 준공한 “함평 ○○○○ 시설 현대화사업 건축공사(1,809,392천 원)”¹⁾를 추진하였다.

지방행정○급 ○○○은 2019. 9. 17.부터 2020. 9. 25.까지 ○○○○○과에서 ○○○○ 시설현대화사업 업무 담당자로, 지방행정○급 ○○○은 2017. 1. 12.부터 2020. 7. 27.까지 ○○과에서 계약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공사기간 연장 요청 실정보고 검토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에 따르면 발주기관에서는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

1) 사업규모 : 지상 1층, 판매시설 등 1,288.96㎡, 비가림시설(막구조) 2,391㎡

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및 제9절에 따르면 호우, 대설, 한파 등 자연현상과 중요 관급자재의 공급 지연 또는 발주 기관의 책임으로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공사기간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일자리경제과)은 [별표] “함평 ○○○○ 시설 현대화사업 공사기간 연장 명세”와 같이 ○○종합건설(주)에서 민원해결 및 동절기 공사 품질 관리 사유 등 총 4회 211일의 공사기간을 연장 요청하는 실정보고서를 제출하자 검토 후 그 중 182일의 공사기간을 연장·승인²⁾하였다.

그러나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실정보고서와 함평군(일자리경제과)의 검토 보고서를 살펴보면 각각의 연장 사유 모두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건축공사 관리자의 검토 의견³⁾없이 공사감독공무원의 검토 보고서 내용과 같이 ○○종합건설(주)의 실정보고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승인하였다.

또한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 내용이 특수공법 적용이나 중대한 현장 여건 변경 등의 사유가 아닌 단순 설계 내역서 물량 조정을 위한 설계변경 실정보고서는 사후 승인을 하여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도 실정보고서⁴⁾ 검토를 사유로 계약부서(재무과)에 2020. 5. 31.부터 2020. 6. 10.까지 공사 중지를 요청⁵⁾하여 공사기간을 10일 연장하였다.

그 결과 현장 확인과 공정관리 및 실정보고 검토 등을 소홀히 하여 공사기간이 장기화 되었고, 전통시장 입점예정 상인 및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3. 공사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 업무 소홀

2) 기상현상(강수량 3mm/일 이상)에 의한 27일 등 총 29일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 불인정

3) 실정보고 4건 중 2건은 건축공사 관리자 의견 첨부, 2건은 감리 경유 및 검토의견서 누락

4) 2020. 0. 00. 실정보고서 접수

5) 일자리경제과-00000(2020. 00. 00.)호 「함평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건축공사 (1차분·2차분) 공사 중지 요청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8절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안에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재무과)은 [별표] “함평 ○○○○ 시설 현대화사업 공사기간 연장 명세”와 같이 1차분 공사기간 연장 요청 공문⁶⁾을 준공기한 1일이 경과한 2019. 12. 17. 접수하고서도 별다른 조치없이 준공기한 3일이 경과한 2019. 12. 19. 계약기간 연장 통보를 하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함평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함평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검토 및 계약업무를 소홀히 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한 지방행정○급 ○○○, 지방행정○급 ○○○를 훈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별표] 생략

6) 일자리경제과-000000(2019. 00. 00.)호 「함평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건축공사 1차분 공사기간 연장 요청」

전 라 남 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수도법 관련 법적 절차 이행 및 일반수도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함평군(환경상하수도과)

훈 계 대 상 자 함평군 ○○○○○○○과 지방시설○급 ○○○

내 용

1. 업무개요

함평군은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도법」에 따라 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방시설○급 ○○○은 2018. 8. 13.부터 2021. 3. 3.까지 ○○○○○○○과에서 상수도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일반수도 설치에 따른 시·도지사 인가 및 환경부 협의 절차 미 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수도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수도 사업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 후 인가·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과 다르게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일반수도 사업 추진 시 시·도지사 인가 및 환경부 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환경상하수도과)은 [표 1] “함평군 일반수도사업 추진에 따른 시·도지사 인가 명세(2017. 2.~2021. 2.)”와 같이 3건의 일반수도 사업⁷⁾을 시·도지사 인가(변경)를 득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함평군 일반수도사업 추진에 따른 시·도지사 인가 명세(2017. 2.~2021. 2.)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시·도지사 인가 여부	비고
계	3개소		22,479			
1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급·배수관로 L=101Km, 가압장 6개소	7,163	2015. 11. 24. ~2018. 5. 31.	부	
2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급배수관로 L=39.52Km, 가압장 4개소	4,838	2018. 2. 26. ~2020. 12. 18.	부	
3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취수탑, 연락교 등 재설치, 그라우팅, 여수로, 도수로 L=1.4Km	10,478	2019. 12. 2. ~ 2021. 11. 10.	부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상수도 국고보조금 예산을 사업내용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3. 대동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는 필요한 경우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공사 규모,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품을 할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수상 작업

7) 담당자 : 환경상하수도과 ○○○ 주무관

에 대한 할증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작업장소가 협소하여 작업 능률저하가 현저할 때 50%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함평군(환경상하수도과)은 2018. 3. 7. (주)○○(대표 ○○○) 외 1개사⁸⁾와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금액 533,202천원)하고 2019. 6. 3.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본 공사 시행을 위하여 2019. 11. 25. 주식회사 ○○○건설(대표 ○○○)과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⁹⁾을 계약(금액 8,481,171천원)하고 2021. 11. 10.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1) 공법 심의 결과 반영 소홀

함평군은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2019. 8. 2. 공법 심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표 2] “특허공법 적용 추진 명세”와 같이 3건의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하여 추진하였다.

[표 2] 특허공법 적용 추진 명세

(단위 : 백만원)

연번	특허권자	권리종류	특 허 내 용	공법심의 금액	설계 금액	비 고
1	○○○	특허권자	합성형 강가시설공법 (특허 제00-0000000호)	648	691	증 43
2	○○○	특허권자	RCM 공법 (특허 제00-0000000호)	105	114	증 9
3	○○○	특허권자	SPC 합성형라멘공법 (특허 제00-0000000호)	448	394	감 54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이런 경우 함평군은 용역사로부터 제안받은 업체¹⁰⁾를 대상으로 최고점을 취득한 업체를 선정하여 평가 시 제시한 금액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했다.

그런데 함평군(환경상하수도과)은 2019. 11. 25. “○○ 농어촌 생활용수 개

8) (주)○○엔지니어링(대표이사 ○○○) 지분율 30%

9) 사업량: 취수탑 재설치, 연락교 재설치 1개소, 기계전기 설비 각 1개소, 도수관로(D700mm) 설치 L=1,408m

10) 가시설 지보재(5개사), 구조물 보수 및 보강공법(5개사), 연락교(5개사)

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법 선정 시 공사비(경제성 30점)를 가장 높게 배정하였으나, 설계 과정 중으로 변경된 지층, 지반변화, 현지어건 등으로 공법심의 시 결정된 공사금액이 아닌 변경된 금액을 적용(감 2백만원)하였다.

특히 “합성형 강가시설공법” 증액(43백만원)으로 인해 배점이 가장 높은 공사비 부문에서 3개사의 순위¹¹⁾가 변경되어 타 공법사에 불이익을 발생시키고, 공법 선정에 대한 행정 신뢰를 실추한 사실이 있다.

2) 수상할증 과다 반영

함평군은 2019. 6. 3. 작업장소가 협소하여 작업 능률저하가 현저하다고 판단하여 수상 작업이 수반되는 품에 대하여 노무비의 25%를 할증하여 공사비 138백만원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함평군(환경상하수도과)은 감사일(2021. 3. 3.) 현재 설계도서 및 현장을 살펴본 결과, 육상에서 가물막이 시트 파일을 항타 시공하여 작업발판(복공판) 확보한 뒤 작업을 시행하여 수상 작업으로 인한 품의 할증 반영은 적절하지 않아 과다 계상된 138,541천원(제 경비 포함)의 감액이 필요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4. 일반수도 설치에 따른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 추진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폐쇄된 상수도관은 전량 철거가 원칙이나 가스관, 통신관, 하수도관 등 타 시설물들이 근접 매설되어 있어 철거 시 다른 시설물들이 파손 우려가 높고 공사가 확대되어 많은 예산 소요와 교통 혼잡, 민원 발생 등의 사유로 지반 내에 그대로 폐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관체 변형에 의한 지반침하와 관 내부 오염된 용수에 의해 토양 및 지하수의 2차 오염 우려가 높아 상수도관 폐쇄 시 몰탈을 충전하고 마개플랜지를 설치하여 관 내부에 이물질이나 토사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는 관종·관경과 매설환경 등에 따라 폐쇄 상수관의 폐기와 충전의 기준을 「폐쇄 상수도관 처리 매뉴얼(한국상하수도협회,

11) 선정된 특허사(648백만원), A사(661백만원), B사(655백만원)

2016)」을 마련하였으며 폐쇄 상수도관 처리기준은 [표 3]과 같다.

[표 3] 폐쇄 상수도관 처리기준

구분		강관	주철관	내충격수도관	유리섬유복합관	폴리에틸렌관
관종	폐기	D300mm 이하	D300mm 이하	D200mm 이하	D200mm 이하	D200mm 이하
	충진	D350mm 이상	D350mm 이상	D250mm 이상	D250mm 이상	D250mm 이상
	※ 과도한 예산 투입시 탄력적으로 폐기 및 충진 설치					
부속 시설	밸브실	- 전량 철거 - 부득이한 경우, 지반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진재로 채움 · 밸브실 뚜껑(철개)은 제거				
	밸브	- 전량 철거 - 부득이한 경우, 밸브를 완전히 개방 후 충진 · 신축관과 같은 연결부속은 철거				
	분기관	- 절단 후 마개플랜지로 막음 - 관종별 처리 기준에 따라 폐쇄				
매설 환경	도로구간	- 전량 철거 원칙 - 왕복 2차선 이하 : D300mm 이하 폐기, D350mm 충진 - 왕복 4차선 이하 : D200mm 이하 폐기, D250mm 충진 - 과도한 예산 투입시 충진 관경 결정 가능				
	토사구간	- 전량 철거 원칙 - 관종별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				
폐기/충진 예외구간		- 논밭 등 경작지 구간 - 임야/산지 구간 - 하천 횡단 구간 - 기타 도로함몰 및 사고 발생가능성이 낮은 구간				

※ 한국 상하수도협회 자료 재구성

한편 함평군은 군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을 위하여 2017. 2. 1. 부터 감사일(2021. 3. 3.) 현재까지 7,058백만원을 투입하여 [표 4]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 명세”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였다.

[표 4]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 명세

(단위 : m, 백만원, mm)

연번	사 업 명	연 장	사업비	관 종류	관 경	비 고
계	3개소	31,569	7,058			
1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1,296	4,838	HI-3P	D 16 ~ 100	
2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400	2,061	주철관	D 700	
3	○○ 하수관로 정비공사 ¹²⁾	8,873	159	HI-3P	D 16 ~ 300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함평군은 교체된 노후관로 중 철거가 어려운 기존 노후관에 대하여는 폐쇄상수도관 처리기준에 따라 폐기하거나 충진하여야 했다.

12) 담당자 : 환경상하수도과 ○○○ 주무관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환경상하수도과)은 감사일(2021. 3. 3.) 현재 교체된 노후 상수도관의 처리 실태를 살펴본 결과, 기존 노후관의 철거가 어려운 구간의 관경 350mm 이상의 주철관은 총진 대상인데도 [표 5] “총진대상 노후 상수도 폐기 명세”와 같이 1,400m 총진 대상 노후상수도관에 대하여 별도의 몰탈 총진 없이 마개플랜지 설치 후 그대로 폐기하였다.

[표 5] 총진대상 노후 상수도관 폐기 명세

(단위 : 백만원, m)

연도	사 업 명	사업비	폐쇄 상수도관			비고
			관종	관경	연장	
합 계	1 건	2,061			1,400	
2019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061	주철관	D700mm	1,400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기존 노후관의 철거가 어려운 구간의 관경 200mm 이하의 내충격수도관은 폐기 대상인데도 [표 6] “폐기(철거) 대상 노후 상수도 폐기 명세”와 같이 30,169m 폐기 대상 노후상수도관에 대하여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폐기하였다.

[표 6] 폐기(철거) 대상 노후 상수도 폐기 명세

(단위 : 백만원, m)

연도	공사명	사업비	폐쇄상수도관			비고
			관종	관경	연장	
합 계	2 건	4,997			30,169	
2018 ~ 2019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4,838	HI-3P	D16~100mm	21,296	
2018	○○ 하수관로 정비공사	159	HI-3P	D16~300mm	8,873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그대로 지하에 폐기된 노후 상수도관의 변형에 따른 지반침하와 토양 및 지하수의 2차 오염의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함평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출하지는 않았으며,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함평군수는

- ① 「수도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 설치 등과 관련하여 시·도지사 인가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시설○급 ○○○을 훈계하고(**훈계**)
- ② 과다 반영된 138,541,000원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하수관로 및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함평군(환경상하수도과)

내 용

1. 업무개요

함평군은 2018. 12월부터 감사일(2021. 3. 3.) 현재 [표 1] “하수관로 및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명세”와 같이 5건(사업비 43,122백만원)의 하수관로 및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하수관로 및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명세

(단위 : km,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사	비고
			계	도급액	관급 등			
계	5건		43,122	31,849	11,273			
1	○○ 하수관로 정비사업(3차)	28.83	13,018	8,485	4,533	'20. 1. 31. ~ '22. 8. 31.	○○○	건설사업 관 리
2	○○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4.91	21,115	17,146	3,969	'19. 8. 7. ~ '22. 9. 12.	○○○	건설사업 관 리
3	○○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9.6	5,215	3,786	1,429	'18. 12. 21. ~ '21. 6. 5.	○○○	건설사업 관 리
4	○○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8	1,745	1,143	602	'20. 5. 25. ~ '22. 8. 27.	○○○	건설사업 관 리
5	○○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9	2,029	1,289	740	'20. 4. 10. ~ '21. 10. 9.	○○○	건설사업 관 리

※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평군(환경상하수도과)은 감사일(2021. 3. 3.) 현재 추진 중인 하수관로 및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설계도서를 살펴본 결과, 설계에 과다 반영되어 감액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 하수관로 정비사업(3차)의 경우

실시설계 시 지장물(우수Box 2.0×2.5m) 저촉이 예상되어 흠막이를 반영하였으나, 굴착 결과 저촉되지 않아 흠막이 30,300천원을 감액하여야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경우

실시설계 이후 “○○골 ○○ ○○○마트 신축공사” 시행으로 인해 상하수도관로 매설 L=160m 및 지장물 보호공(가로등) 7개소가 중첩되어 49,804백만원(제경비 포함)을 감액하여야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경우

실시설계 시 추정된 지하수위 변동으로 물푸기공, 추진공 가 시설(Sheet Pile) 설치비 27,253천원, “○○ ○○○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중복된 이토·공기 변실 25,294천원, 지장물 보호공(관 매달기) 미 시행으로 3,483천원을 감액하여야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 ○○지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경우

○○지구는 콘크리트 포장줄눈을 관로복구 폭(B=1.5m)을 반영하여야 하나,

전체 폭(B=3.0m)으로 반영하여 6,400천원을 감액하여야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구는 굴착 시 사면 붕괴 방지를 위한 조립식 간이 흙막이는 절토고 2.0m 이상인 곳에 반영하여야 하나 2.0m 이하인 구간에 15m가 반영되어 1,595천원을 감액하고 주변 민원으로 인해 EGI웬스(H=2.4m) 30m 미설치로 2,552천원을 감액하여야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의견 함평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함평군수는 과다 반영된 ‘○○ 하수관로 정비사업(3차)’의 30,300,000원, ‘○○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49,804,000원, ‘○○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56,030,000원, ‘○○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6,400,000원, ‘○○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4,147,000원 등 총 146,681,000원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